

2025 핵심 개정세법



[한국세무사회 2025 핵심 개정세법] 발간에 부쳐

자랑스러운 세무사 회원님,

그리고 세무사와 함께 하는 국민과 기업 납세자 여러분!

세무사는 세무사법에 따라 공공성 높은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 권익보호와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에 이바지하는 법적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세무사의 사명은 단순한 구호나 목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현장에서 고객과 국민을 위해 매일매일 구현하는 직무 그 자체여야 합니다.

그러기에 따뜻한 가슴과 최신의 정보 및 콘텐츠로 무장한 세무사에게 개정세법은 전문성과 책임성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번에도 국회의 세법개정을 맞아 가장 먼저, 가장 알차게 ‘2025 핵심 개정세법’ 도서를 발간했습니다. ‘2025 핵심 개정세법’을 실무에서 활용할 때는 실제 법조문과 함께 향후 나오게 되는 시행령, 시행규칙의 조문까지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만7천 세무사공동체인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 회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권위있는 조세입법 정보를 가장 먼저, 가장 유용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법해설서, 핵심실무, 테마별 실무서 등 권위있는 전문서적은 물론 조세정보와 세무사 브리핑 등 정책자료까지 한국세무사회 도서혁신 라인업과 함께 국민에게 사랑받는 최고의 조세전문가가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한국세무사회 회장

구재이

CONTENTS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국민·기업 납세자용)

01	부동산 세금제도	3
02	금융소득 세금제도	5
03	보급 생활자 세금제도	6
04	국민생활 세금제도	8
05	기업경영 세금제도	9
06	기업세금 감면제도	13

2025 세목별 핵심 개정세법(세무사·조세전문가용)

01	국세기본법	19
02	국세징수법	21
03	소득세법	22
04	법인세법	27
05	부가가치세법	31
06	상속세 및 증여세법	33

07	종합부동산세법	34
08	조세특례제한법	35
0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50
	• 기(既) 개정사항 중 2026년도부터 시행 / 52	

2025 개정세법 종전-개정사항 비교(상세본)

01 국세기본법

01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 (국기법 §10, 국기령 §5의2)	57
02	독촉장 송달비용을 납부자연가산세에 포함 (국기법 §21, §47의4, §47의5)	58
03	미분할 상속재산 및 우회상속 관련 무신고·과소신고·납부자연가산세 면제 사유 추가 (국기법 §47의2, §47의3, §47의4)	59
04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자연가산세 산정방법 개편 (국기법 §47의4, §47의5)	60
05	확정신고 기한 내 예정·중간신고의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시 가산세 감면 제도 명확화(국기법 §48)	61
06	고충민원 신청인도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 포함 (국기법 §59의2)	61
07	권리보호 심의 요청 관련 절차 신설 (국기법 §81의19)	62

CONTENTS

02 국세징수법

01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 근거규정 마련 (국징법 §10의2, 국징령 §8의2)	63
02 가상자산 매각 위탁 근거 마련 (국징법 §103)	64

03 소득세법

01 임목 벌채·양도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소득법 §12)	65
02 육아휴직수당등 비과세 대상 및 한도 확대 (소득법 §12, 소득령 §10의2)	66
03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소득법 §12)	67
04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 (소득법 §17)	67
05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 소득에 연금계좌 소득 추가 (소득법 §57의2①·②·§129⑧·⑨·⑩)	68
06 개인투자자에 대한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 변경 (소득법 §57의2②·③)	69
07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소득법 §59의4③)	70
08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지원 (소득법 §59의4③)	71
09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보완 (소득법 §96③)	72
10 양도소득 이월과세 적용범위 합리화 (소득법 §97의2①)	72

11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 확대 (소득법 §118의9~§118의18)	73
12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소득법 §129)	74
13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 신설 (소득법 §144의2②)	75
14	비거주자 제한세율 특례 신청서 제출 의무 신설 (소득법 §156의6, 소득령 §207의8③, 법인법 §98의6, 법인령 §138의7③)	75
15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의 발급의무 규정 보완 (소득법 §162의2②, §162의3③)	76
16	국외주식 거래명세서 수집 근거 마련 (소득법 §174의2)	77
17	수용 시 주택부수토지 판단 기준일 조정 (소득령 §154⑦·§167의5·§168의12)	78
18	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중과 배제 기간 연장 (소득령 §167의3)	78
19	퇴직소득 세액정산 방법 보완 (대통령령 제35349호 소득령 §203)	79
20	연말정산 간소화 관련 자료집중기관 추가 (소득령 [별표 4])	79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및 세액공제 시행시기 유예 • 80		
21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시기 유예 (법률 제19196호 소득법 §81의11·부칙, 법률 제19193호 법인법 §75의7·부칙)	80
22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간 유예 (법률 제19199호 조특법 §104의5·부칙)	80

CONTENTS

04 법인세법

01 법인투자자에 대한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 합리화 (법인법 §15②, §57의2①·②·③)	81
02 삼각합병 시 합병대가의 범위 명확화 (법인법 §16②)	82
03 사회적기업이 지출한 기부금 손금인정 확대 (법인법 §24③)	82
04 배당금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 (법인법 §51의2)	83
05 법인세율 환원 (법인법 §55①)	84
06 연결납세 취소·배제시 사후관리 규정 정비 (법인법 §76의9, §76의12)	85
07 연결법인 합병 시 이월결손금·자산처분손실 공제범위 등 규정 정비 (법인법 §76의13③, §76의14②, §113⑤)	86
08 연결법인 가산세 규정 정비 (법인법 §76의21)	86
09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 범위 명확화 (법인법 §93)	87
10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 중 증여 범위 명확화 (법인법 §93)	88
11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미제출 시 과태료 신설 (법인법 §94의2④, §124②)	88
12 인건비 제한 적용대상 비영리법인 범위 명확화 (법인령 §56⑪)	89
13 CR리츠가 매입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법인령 §92의2②)	90

14 내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개선 (법인령 §111⑧)	90
---	----

05 부가가치세법

01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범위 확대 (부가법 §55, 부가령 §100)	91
02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 (부가법 §60)	91
03 납세의무자에게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의무 부과 (부가법 §74)	92
04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 적용기한 연장 (부가령 §84②·③)	93

06 상속세 및 증여세법

01 영리법인에 유증시 상속세 납부의무자 확대 (상증법 §3의2)	94
02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개설 증권시장 주식거래 증여세 과세 합리화 (상증법 §44, 상증령 §26, §33)	95
03 특정법인의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범위 명확화 (상증법 §45의5)	96
04 공익법인 사후관리 대상 출연재산 범위 확대 (상증법 §48)	96

07 종합부동산세법

01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규정 정비 (총부법 §7, §12 등)	97
--	----

CONTENTS

02	신택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물적납세의무 적용범위 확대 (중부법 §7의2, §12의2)	97
03	합산배제 요건 미충족시 중부세가 추정되는 대상 주택 추가 (중부법 §17⑤, 중부령 §10)	98
04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중과 배제 기간 연장 (중부령 §4의3)	98

08 조세특례제한법

01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기준금액 상향 (조특법 §6)	99
02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을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조특법 §8의3)	100
03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한도 확대 (조특법 §12의2③)	101
04	벤처투자회사 및 내국법인의 벤처투자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조특법 §13, §13의2)	102
05	벤처투자 비과세 적용대상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3, 조특령 §12)	103
06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벤처투자 세제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3의2)	104
07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 배당소득 비과세 신설 (조특법 §14)	105
08	국제결제은행 국내 투자소득 비과세 신설 (조특법 §21④·⑤·⑥)	106
09	영상콘텐츠 세제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25의6)	107
10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25의7)	107

11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조특법 §25의8, 조특령 §22의12, 조특칙 §13의11 신설)	108
12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조특법 §28의5, 조특령 §25의5 신설)	109
13	통합고용세액공제액 구조 개편 및 사후관리 합리화 (조특법 §29의8, 조특령 §26의8)	110
14	중견·대기업 최소 고용 증가 인원수 신설 (조특법 §29의8, 조특령 §26의8)	111
15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을 외국법인에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38의4, 조특령 §35의5)	111
16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조특법 §58)	112
17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 (조특법 §63·§63의2, 조특령 §60·§60의2)	113
18	영농조합법인 등에 농지 출자시 세제지원방식 전환 (조특법 §66, §68)	114
19	안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특례 적용 범위 확대 (조특법 §71의2)	115
20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합리화 (조특법 §72)	115
21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조특법 §85의6②)	116
22	비과세 종합저축 과세특례 가입대상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88의2)	116
23	농·어·임업인 등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및 저율 분리과세 일부 도입 (조특법 §88의5, §89의3, 조특령 §82의5, §83의3)	117
24	ISA 편입 가능 상품 명확화 (조특법 §91의18③)	118

CONTENTS

25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미추징 사유 추가 (조특법 §91의22)	118
26 소득요건 기준연도 특례 대상에 조합 등 예탁금·출자금 추가 (조특법 §91의24)	119
27 청년미래적금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91의25)	120
28 무주택 주말부부에 대해 각각 월세 세액공제 허용 (조특법 §95의2)	121
29 프로젝트 리츠에 대한 현물출자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97의9, 조특령 §97의10 신설)	122
30 농어촌주택등 취득시 양도세 특례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99의4, 조특령 §99의4)	123
31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합리화 (조특법 §99의9)	124
32 영세 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요건 완화 (조특법 §99의10, 조특령 §99의9)	125
33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특례 신설 (조특법 §99의15)	126
34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개편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0의32, 조특령 §100의32, 조특칙 §45의10)	127
35 대학의 수익용 자산 대체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조특법 §104의16)	128
36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추징 예외사유 신설 (조특법 §104의19)	129
37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부분복귀 후 추징사유에 국외사업장을 축소완료하지 않은 경우 추가(조특법 §104의24④, 조특령 §104의21⑧)	129
38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조특법 §104의27 신설)	130

39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개편 (조특법 §104의30, 조특령 §104의27)	131
40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 (조특법 §104의36)	132
41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및 추정사유 합리화 (조특법 §105①·②)	133
42	중고차 등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한도 신설 (조특법 §108)	134
43	저도수 혼성주류에 대한 한시적 주세 감면 신설 (조특법 §115의2)	135
44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벤처투자조합 투자목적회사(SPC) 추가 (조특법 §117①·②)	135
45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시장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17①·②)	136
46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조특법 §121의26)	137
47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조특법 §126의2)	138
48	지역사랑상품권 업무추진비 손금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36)	139
49	조세감면제도 존치 의견 제출 시 의견서에 포함될 내용 구체화 (조특법 §142)	140
50	조세지출결산서 작성 의무 신설 (조특법 §142의3)	140
51	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 신설 및 확대 (조특령 [별표 7의2])	141
52	신성장·원천기술 세부기술 신설 (조특령 [별표 7])	142

CONTENTS

53 인공지능 분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세액공제 사후관리 방안 마련 (조특령 §21(4)·(5)·(10)·(14)·(17))	143
54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특례 가액요건 상향 (조특령 §68의2(1))	144
55 동업기업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서류 명확화 (조특령 §100의24, 조특칙 §46의2)	144

0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01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제출 서류 추가 (국조법 §6(2))	147
02 거주자증명서 발급대상에 투자신탁 등 추가 (국조법 §41(2))	148
03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및 납부 (국조법 §63·§84)	149
04 글로벌최저한세 계산 시 대상조세 배분방식 보완 (국조법 §67(1))	150
05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및 배분 (국조법 §73의2 신설)	151
06 무국적구성기업에 대한 내국추가세 과세 (국조법 §73의2 신설)	152
07 최소적용제외 특례 (국조법 §74)	152
08 소수지분구성기업·공동기업에 대한 특례 (국조법 §75, §77)	153
09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국조법 §79)	153
10 적용면제 특례 (국조법 §80)	154

11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 적용기한 신설 (국조법 §111①)	155
--	-----

10 기타 법률

01 교육세 세율 인상 (교육세법 §5)	156
02 주류 교육세율 명확화 (교육세법 §5①)	156
03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한시적 개별소비세 경감 신설 (개소법 §1②)	157
04 담배 폐기 시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절차 간소화 (개소법 §20의3③, 개소령 §34④)	158
05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청년미래적금 추가 (농특세법 §4)	159
06 농어촌특별세 납부유예 규정 신설 (농특세법 §9의2)	159
07 주류제조면허 취소 예외규정 신설 (주류면허법 §13)	160
08 주류용기 등 검정제도 간소화 (주류면허법 §28, §38, 주류면허령 §35)	161
2025.11.17.~12.12. 입법예고 • 16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162	
01 단시간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판단 기준 간소화 (조특령 §26의8)	162

CONTENTS

| 2025.12.1.~12.15. 입법예고 | • 163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 163

01 증권거래세율 환원

(증권령 §5) 163

• 소득세법 시행령 / 164

02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

(소득령 §26의3) 164

2025

핵심 개정세법

01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
(국민·기업 납세자용)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

01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

01

부동산 세금제도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적용 예외 대상 추가(소득법 §97의2①)

-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특례를 적용할 때, 양도 당시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특례 적용배제 <적용시기> '2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수용 시 주택부수토지 판단 기준일 조정(소득법 §154⑦·§167의5·§168의12)

-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 매수·수용되거나 그 밖의 법률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 사업인정 고시일 직전일의 토지 용도에 따라 주택부수토지의 인정 배율 결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2025.11.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기간 연장(소득법 §167의3)

-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분으로 1년 연장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중과 배제 기간 연장(종부법 §4의3)

-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로 1년 연장

02

2025 세목별 핵심 개정세법

03

2025 개정세법 종전 개정사항 비교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대상 지역에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추가(조특법 §71의2①)**

- 인구감소지역과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추가
<적용시기> '25.11.28. 이후 취득하는 주택분부터 적용

■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추정 예외사유 신설(조특법 §104의19)**

-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 취득 후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로 5년 이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종부세 추정 제외
<적용시기> '26.1.1. 이후 추정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특례 가액요건 상향(조특령 §68의2①)**

-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 가액을 수도권 공시가격 4억원, 비수도권 공시가격 9억원으로 상향
<적용시기> '25.8.14.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사항

■ **고가주택 2주택자의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구체화(소득령 §53)**

-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원 초과) 2주택자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을 전세보증금 합계 12억원 초과로 규정
<적용시기> '2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02

금융소득 세금제도

01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

■ 비과세 종합저축 과세특례 가입대상 조정(조특법 §88의2)

- 65세 이상 거주자에서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인 65세 이상 거주자로 조정
<적용시기> '26.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미추징 사유 추가(조특법 §91의22)

-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중도해지 시 감면세액 미추징

■ 청년미래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비과세(조특법 §91의25)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천300만원 이하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비과세

■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신설(조특법 §104의27)

- 거주자가 배당성향, 배당금액 증가 등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14%부터 30%까지의 세율로 분리과세

① 적용요건 (① + ② + ③)	①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② 기준연도(2024년 사업연도) 대비 현금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을 것 ③ i)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ii) 배당성향 25% 이상 및 전년 대비 배당 10% 이상 증가
② 적용세율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3억원) 20%, (3억원~50억원) 25%, (50억 초과) 30%

<적용시기> '26.1.1. 이후 지급되는 배당분부터 적용

02

2025
세무별
핵심
개정세법

03

2025
개정세법
종전 개정사항
비교

03

보급 생활자 세금제도

■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소득법 §12)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4에 따라 교직원으로 보는 자가 소속기관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등도 소득세 비과세
- 근로자 또는 종교 관련 종사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에서 해당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상향

<적용시기> '26.1.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소득법 §59의4③)

-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등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에 관계없이 세액공제 가능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중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을 위하여 예능을 교습하는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적용시기> '26.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 월세세액공제 허용(조특법 §95의2)

-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세대주에 대한 월세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월세세액공제 추가로 적용(부부합산 한도 연 1,000만원)

<적용시기> '26.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조특법 §126의2)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기본공제 한도 금액을 자녀 및 손자녀 등 부양가족 1명당 50만원(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 25만원) 씩 최대 100만원(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 50만원)까지 추가 상향

기본공제 한도	종전 (자녀수 무관)	개정		
		무자녀	자녀 1인	자녀 2인 이상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300만원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	250만원	250만원	275만원	300만원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01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

02

2025
세목별
핵심
개정세법

03

2025
개정세법
종전+개정사항
비교

04

국민생활 세금제도

■ **고충민원 신청인도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 포함(국기법 §59의2)**

- 납세자가 국세 관련 처분 등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의 절차 외에 과세관청에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가능
<적용시기> '26.1.1. 이후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58)**

-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기부한 경우의 세액 공제율을 15% → 40%로 상향
<적용시기> '26.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요건 완화(조특법 §99의10)**

- 3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도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등 체납액 징수 특례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고, 체납액 기준도 5천만원 → 8천만원 이하로 상향
<적용시기> '26.1.1. 이후 특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특례 신설(조특법 §99의15)**

-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5천만원 이하의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도록 하는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특례의 법적 근거 신설
<적용시기> '26.1.1. 이후 시행

05

기업경영 세금제도

01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

■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법 개선(국기법 §47의4, §47의5)

-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 등이 납부고지서에 따른 지정납부기한까지 국세 등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납부지연가산세 산정
- 납세자가 체납된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독촉하는 경우 그 독촉에 드는 비용을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

<적용시기> '26.7.1.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 다만, '26.7.1.전에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26.7.1.을 지정납부기한으로 보아 개정규정 적용

<경과조치> '26.6.30. 이전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은 종전 규정을 적용

02

2025
세무별
핵심
개정세법

■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을 조정(소득법 §17)

- 10% → 11% 조정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시기 유예

(법률 제19196호 소득법 §81의11·부칙, 법률 19193호 법인법 §75의7·부칙)

- 2026.1.1. → 2027.1.1. 이후로 시행 시기 유예

03

2025
개정세법
종전·개정사항
비교

■ 사업소득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 분납제도 신설(소득법 §144의2)

-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으로 추가 징수하여야 하는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해당 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 허용

<적용시기> '26.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의 발급의무 규정 보완

(소득법 §162의2②, §162의3③)

-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중 예외적으로 다른 사업자 매출과 합산 발급 가능한 대상 및 방법 확대

<적용시기> '26.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사회적기업의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법인법 §24③)

- 사회적기업의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 비율을 20% → 30%로 상향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법인세 세율 조정(법인법 §55①)

- 일반 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는 22%, 3천억원 초과는 25%로 법인세율을 각각 1%p씩 인상

-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00억원 이하는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는 22%, 3천억원 초과는 25%로 법인세율을 각각 1%p씩 인상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일반법인]

〈중전〉		〈개정〉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0~2억원	9%	0~2억원	10%
2억원~200억원	19%	2억원~200억원	20%
200억원~3,000억원	21%	200억원~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4%	3,000억원 초과	25%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종전〉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19%
200억원~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4%



〈개정〉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

■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범위 확대(부가법 §55, 부가령 §100)

-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추가
 <적용시기> '26.4.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부가법 §60)

- 사업자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수취한 경우,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등을 발급·수취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에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현행 3% → 4%로 상향
 <적용시기> '26.1.1. 이후 가공세금계산서등을 발급·수취하는 분부터 적용

■ 납세의무자에게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의무 부과(부가법 §74)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하는 증빙자료 제출의무 부과
 <적용시기> '26.1.1.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출하도록 하는 분부터 적용

■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 적용기한 연장 (부가령 §84②·③)

-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

■ 영리법인에 유증 시 상속세 납부의무자 확대(상증법 §3의2)

- 영리법인이 수유자인 경우 등에는 그 법인의 주주 중 상속인의 배우자 및 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도 상속세 과세
<적용시기> '26.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지역사랑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손금 확대(조특법 §136)

-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도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와 함께 추가 손금산입한도가 적용되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추가 손금산입 한도를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 → 20%로 상향

구 분		손금 한도	
일반 한도	기본한도	1,200만원(중소기업 3,600만원)	
	수입금액별 한도	수입금액	비율
		100억원 이하	0.3%
		100억원~500억원	0.2%
		500억원 초과	0.03%
추가 한도	문화비 지출분	일반한도의 20%	
	전통시장 + 지역사랑상품권	일반한도의 10% → 20%	

<적용시기> '26.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사항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소득령 [별표 3의3])

- ❶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❷사진 처리업, ❸납시장 운영업, ❹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등 4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138개 → 142개 업종)
<적용시기> '26.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

06

기업세금 감면제도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범위 확대(조특법 §6)

- 소규모 창업중소기업의 기준을 연간 수입금액 8천만원 → 1억4백만원 이하인 기업으로 완화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 확대(조특법 §25의6)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5% → 10%로 상향
 <적용시기> '26.1.1. 이후 발생하는 비용 분부터 적용

■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25의7)

-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시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25의8)

-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의 10%(중소기업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웹툰콘텐츠가 처음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적용시기> '26.1.1. 이후 발생하는 비용 분부터 적용

■ 고용지원을 위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합리화(조특법 §29의8)

-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고용하는 경우는 더 많은 공제금액을 적용받도록 하고,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한 경우에도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도록 세액공제 구조 개편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에는 최소고용증가인원수를 초과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만 세액공제 적용

01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

02

2025
세목별
핵심
개정세법

03

2025
개정세법
종전·개정
상황
비교

1인당 ¹⁾ 공제액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우대 (청년등 ²⁾)	1,450(3년) → (1년차) 700 + (2년차) 1,600 + (3년차) 1,700	1,550(3년) → 1,000 + 1,900 + 2,000	800(3년) → 500 + 900 + 900	400(2년) → 300 + 500
기본	850(3년) → (1년차) 400 + (2년차) 900 + (3년차) 1,000	950(3년) → 700 + 1,200 + 1,300	450(3년) → 300 + 500 + 500	—

1) 중견·대기업의 경우 ‘고용증가인원 - 최소 고용증가인원’ 기준

2) 청년(15~34세),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조특법 §63, §63의2)

○ 기업이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성장촉진지역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10년 동안 감면대상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전부 감면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법인세의 50%를 감면하되, 이전기업이 지방에 투자한 금액 및 이전한 본사 또는 공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연계된 감면한도 적용

○ 이전기업의 지방에 대한 투자·고용과 연계된 감면한도 신설*

※ 지방 투자누계액의 70% + 지방근무 상시근로자 1인당 1,500만원(청년·서비스업 2,000만원)

○ 감면받은 후 2년 내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추정

[지방이전 세액감면기간 확대]

구분	낙후지역 ¹⁾		그 외 지역	
	종전	개정	종전	개정
수도권²⁾	5년 100% + 2년 50%	5년 100% + 3년 50%	<감면 없음>	
수도권 연접지역³⁾	5년 100% + 2년 50%	5년 100% + 3년 50%	5년 100% + 2년 50%	5년 100% + 3년 50%

구분	낙후지역 ¹⁾		그 외 지역	
	종전	개정	종전	개정
지방광역시	7년 100% + 3년 50%	7년 100% + 4년 50%	5년 100% + 2년 50%	5년 100% + 3년 50%
중규모도시 ⁴⁾	7년 100% + 3년 50%	10년 100% + 5년 50%	5년 100% + 2년 50%	5년 100% + 3년 50%
그 외	10년 100% + 2년 50%	10년 100% + 5년 50%	7년 100% + 3년 50%	7년 100% + 4년 50%

- 1) 인구감소지역, 성장축진지역, 고용·산업위기지역
- 2) 중소기업이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공장 이전하는 경우만 적용(본사 이전은 미적용)
- 3) 당진시, 아산시, 원주시, 음성군, 진천군, 천안시, 춘천시, 충주시, 홍천군(내면 제외), 횡성군
- 4) 구미시, 김해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시, 청주시, 포항시

<적용시기> '26.1.1. 이후 공장·본사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5.12.31. 이전에 기존 공장·본사를 철거·폐쇄하는 등 지방이전에 착수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중고차 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 신설(조특법 §108)

-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에 대해 공제한도(매출액 - 세금계산서 매입액) 신설하고, 2개 과세기간(1년) 간 이월공제 허용

<적용시기> '26.7.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01

2026
발라지는
세금제도

02

2025
세목별
핵심
개정세법

03

2025
개정세법
종전·개정
비교

2025

핵심 개정세법

02

2025 세목별 핵심 개정세법
(세무사·조세전문가용)

2025 세목별 핵심 개정세법

01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

01

국세기본법

■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국기법 §10)

- 일반우편 송달대상에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후 무(과소) 납부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 포함
 <적용시기> '26.1.1. 이후 납부고지서 발송분부터 적용

■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법 개선(국기법 §47의4, §47의5)

-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 등이 납부고지서에 따른 지정납부기한까지 국세 등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하루 단위로 납부지연가산세를 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납부지연가산세 산정
- 납세자가 체납된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독촉하는 경우 그 독촉에 드는 비용을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
 <적용시기> '26.7.1.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 다만, '26.7.1.전에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26.7.1.을 지정납부기한으로 보아 개정규정 적용
 <경과조치> '26.6.30. 이전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은 종전 규정을 적용

02

2025
세목별
핵심
개정세법

03

2025
개정세법
종전·개정
상황
비교

■ **확정신고 기한 내 예정·중간신고의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시 가산세 감면 제도 명확화(국기법 §48)**

- 예정·중간신고의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 시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50% 감면 요건 중 확정신고의 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중간신고를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로 가산세 감면제도 합리화

■ **고충민원 신청인도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 포함(국기법 §59의2)**

- 납세자가 국세 관련 처분 등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의 절차 외에 과세관청에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가능
<적용시기> '26.1.1. 이후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권리보호 심의 요청 관련 절차 신설(국기법 §81의19)**

-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보완기간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 통지기간에 미포함
-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 통지기간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통지기간을 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연장하려는 사실과 사유를 납세자에게 통지
<적용시기> '26.1.1. 이후 세무조사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02

국세징수법

■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 근거규정 마련(국징법 §10의2)

-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 체납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확인원으로 하여금 실태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적용시기> '26.1.1. 이후 실태확인 실시분부터 적용

■ 가상자산 매각 위탁 근거 마련(국징법 §103)

-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가상자산의 매각을 포함
<적용시기> '26.10.1. 이후 가상자산을 매각하는 분부터 적용

01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

02

2025
세목별
핵심
개정세법

03

2025
개정세법
종전 개정사항
비교

03

소득세법

■ 임목 벌채·양도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소득법 §12)

-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 600만원에서 연 3,000만원으로 상향
 <적용시기> '2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소득법 §12)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4에 따라 교직원으로 보는 자가 소속기관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등도 근로자나 공무원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득세 비과세
- 근로자 또는 종교 관련 종사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에서 해당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상향
 <적용시기> '26.1.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소득법 §17)

-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배당가산율을 10% → 11%로 조정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6.12.31. 이전 지급받은 소득분은 종전 규정 적용

■ 간접투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

(소득법 §57의2①·②, §129⑧·⑨·⑩)

- 연금계좌를 통하여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서도 그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간접투자회사 등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간접투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 '26.7.1. 이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 개인투자자에 대한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 변경 (소득법 §57의2②·③)

- 종합소득과세 또는 퇴직소득과세 시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을 원천징수 시 계산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공제금액의 합계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변경
- <적용시기> '26.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소득법 §59의4③)

-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등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에 관계없이 세액공제 가능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중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을 위하여 예능을 교습하는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적용시기> '26.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시기 유예 (법률 제19196호 소득법 §81의11·부칙, 법률 19193호 법인법 §75의7·부칙)

- 2026.1.1. → 2027.1.1. 이후로 시행 시기 유예

■ 이증과세 조정을 위한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보완(소득법 §96③)

-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합리화를 위해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시가보다 높게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에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배당 등으로 소득처분된 경우 양도가액에서 소득처분금액을 차감하는 방법 추가
- <적용시기> '2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01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

02

2025
세목별 핵심 개정세법

03

2025
개정세법
종전 개정사항
비교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적용 예외 대상 추가(소득법 §97의2①)

-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특례를 적용할 때, 양도 당시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특례 적용배제 <적용시기> '2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 확대(소득법 §118의9~§118의18)

- 국외 전출자가 출국 당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주식 등에 국외 주식 등을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출국하는 분부터 적용

■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소득법 §129)

- 연금계좌 납입액 중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4% → 3%로 인하
-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할 때 실제 수령연차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을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60% → 50%로 인하
<적용시기> '26.1.1. 이후 연금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 사업소득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 분납제도 신설(소득법 §144의2)

-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으로 추가 징수하여야 하는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해당 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 허용
<적용시기> '26.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 비거주자 제한세율 특례 신청서 제출 의무 신설(소득법 §156의6, 법인법 §98의6)

-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신청서등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받은 신청서등과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국내원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

<적용시기> '26.1.1. 이후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의 적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의 발급의무 규정 보완(소득법 §162의2②, §162의3③)

-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중 예외적으로 다른 사업자 매출과 합산 발급 가능한 대상 및 방법 확대

<적용시기> '26.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국외주식 거래명세서 수집 근거 마련(소득법 §174의2)

- 국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국외주식 거래내역 자료 제출 근거 마련

<적용시기> '26.1.1. 이후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적용

■ 수용 시 주택부수토지 판단 기준일 조정(소득법 §154⑦·§167의5·§168의12)

-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 매수·수용되거나 그 밖의 법률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 사업인정 고시일 직전일의 토지 용도에 따라 주택부수토지의 인정 배율 결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2025.11.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기간 연장 (소득법 §167의3)

-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시 중과대상 주택 및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분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분으로 1년 연장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별 자료집중기관 추가(소득령 [별표 4])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증명자료에 대한 자료집중기관에 보건복지부 추가
- <적용시기> 영 시행일(2025.11.28.)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04

법인세법

01

2026
발라지는
세금제도

■ 법인투자자에 대한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 합리화 (법인법 §15②, §57의2①·②·③)

- 법인의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합리화를 위해 익금 범위에 세액공제 대상인 간접투자 외국법인세액(㉠)을 추가하고 이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방식 변경*

* (공제한도금액) $A \times B / C$

A : 산출세액

B : 펀드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한 소득여부와 무관)합계액 + ㉠

C : 과세표준(외국납부세액을 익금의 범위에 포함함에 따라 A, C에도 ㉠이 반영되는 결과)

<적용시기> '26.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삼각합병 시 합병대가의 범위 명확화(법인법 §16②)

- 합병대가의 범위를 명확화하기 위해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중 완전모회사인 내국법인의 주식뿐만 아니라 외국법인의 주식까지 포함

■ 사회적기업의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법인법 §24③)

- 사회적기업의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 비율을 20% → 30%로 상향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신설(법인법 §51의2)

-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배당한 경우 그 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그 배당을 받은 주주 등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해당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가 소득공제 적용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02

2025
세목별
핵심
개정세법

03

2025
개정세법
종전 개정사항
비교

■ 법인세 세율 조정(법인법 §55①)

- 일반 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는 22%, 3천억원 초과는 25%로 법인세율을 각각 1%p씩 인상
 -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00억원 이하는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는 22%, 3천억원 초과는 25%로 법인세율을 각각 1%p씩 인상
-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일반법인]

〈종전〉			〈개정〉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0~2억원	9%	→	0~2억원	10%
2억원~200억원	19%		2억원~200억원	20%
200억원~3,000억원	21%		200억원~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4%		3,000억원 초과	25%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종전〉			〈개정〉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19%	→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3,000억원	21%		200억원~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4%		3,000억원 초과	25%

■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등에 따른 사후관리 합리화(법인법 §76의9, §76의12)

- 연결납세방식 적용 승인 후 5년 이내에 연결납세방식이 취소되거나 연결자법인이 배제되는 경우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소득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한 결손금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나, 그 결손금에 대하여 이미 대가를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경우에는 익금 또는 손금 산입에 제외
- <적용시기> '26.1.1. 이후 취소·배제되는 분부터 적용

연결법인 합병 시 이월결손금·자산처분손실 공제범위 등 규정 정비 (법인법 §76의13③, §76의14②, §113⑤)

- 연결모법인이 승계받은 이월결손금, 적격합병 후 5년 내 발생한 자산처분손실, 합병한 경우 구분경리에 대해서 연결법인으로 개정하여 연결자법인에 대한 규정을 보완

연결법인 가산세 규정 정비(법인법 §76의21)

- 연결법인 가산세 합리화를 위해 연결모법인의 가산세 항목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추가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 합리화(법인법 §93)

- 외국법인이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를 통하여 지급받는 배당소득도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포함
- 외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자산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에 포함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미제출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법인법 §94의2④, §124②)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외국법인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적용시기> '26.1.1. 이후 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분부터 적용

인건비 제한 적용대상 비영리법인 범위 명확화(법인령 §56⑩)

- 임직원 인건비 한도 제한규정이 적용되는 비영리법인의 범위에 장학법인과 사회복지법인만 포함된다는 점 명확화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매입한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에 대한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배제(법인령 §92의2②)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매입한 비수도권 소재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 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배제

<적용시기> 영 시행일(2025.11.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내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개선(법인령 §111⑧)

- 국제예탁결제기구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예탁받은 국채 등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국채 등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적용시기> 영 시행일(2025.11.28.) 이후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05

부가가치세법

01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

■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범위 확대(부가법 §55, 부가령 §100)

-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업종에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추가
<적용시기> '26.4.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부가법 §60)

- 현행법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는 지속되고 있는 등 제재효과가 미미하므로 사업자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수취한 경우,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등을 발급·수취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에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현행 3% → 4%로 상향
<적용시기> '26.1.1. 이후 가공세금계산서등을 발급·수취하는 분부터 적용

02

2025 세목별 핵심 개정세법

■ 납세의무자에게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의무 부과(부가법 §74)

- 최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조세감면 특례를 적용받고자 등록한 사업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하면서 허위로 감면 특례를 받고 있는 경우가 적발되고 있어 허위 세액감면을 방지하고 공정한 세제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하는 증빙자료 제출의무 부과
<적용시기> '26.1.1.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출하도록 하는 분부터 적용

03

2025 개정세법 종전 개정사항 비교

■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 적용기한 연장
(부가령 §84②·③)

- 소상공인의 원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면세농산물 등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한도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

06

상속세 및 증여세법

01

2026
발라지는
세금제도

■ 영리법인에 유증 시 상속세 납부의무자 확대(상증법 §3의2)

- 영리법인을 통한 상속세 회피 방지하기 위하여 영리법인이 수유자인 경우 등에는 그 법인의 주주 중 상속인의 배우자 및 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도 상속세 과세
 <적용시기> '26.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개설 증권시장 주식거래 증여세 과세 합리화(상증법 §44, 상증령 §26·§33)

-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유가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도 증권시장과 같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재산에서 제외
 <적용시기> '26.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 특정법인의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범위 명확화(상증법 §45의5)

- 특정법인과 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시 증여자 적용범위를 특정법인 지배주주 본인 포함하도록 규정 명확화

■ 공익법인 사후관리 대상 출연재산 범위 확대(상증법 §48)

- 공익법인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 해당 재산의 운용수익으로 취득한 재산 및 해당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재산도 포함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02

2025
세목별
핵심
개정세법

03

2025
개정세법
종전 개정사항
비교

07

종합부동산세법

■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규정 정비(중부법 §7, §12 등)**

- 위탁자별 구분 과세가 곤란한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의 효율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수탁자로서 납세의무자가 되는 조합의 범위를 종전의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뿐만 아니라 위탁자별로 구분과세가 곤란한 조합까지 확대
<적용시기> '26.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물적납세의무 적용범위 확대
(중부법 §7의2, §12의2)**

-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채권 확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탁자가 신탁주택 또는 신탁토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부과대상에 해당 신탁주택 또는 신탁토지의 관리, 처분, 운용 등을 통하여 수탁자가 얻은 재산 포함
<적용시기> '26.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 **합산배제 요건 미충족 시 중부세가 추징되는 대상 주택 추가(중부법 §17⑤)**

-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제외 주택의 요건을 추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대하여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는 대상 주택의 범위와 관련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근거 마련
<적용시기> '26.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중과 배제 기간 연장(중부령 §4의3)**

-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배제하고 있는데, 그 적용시기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로 1년 연장

08

조세특례제한법

01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범위 확대(조특법 §6)

- 일반 창업중소기업보다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는 소규모 창업중소기업의 기준을 연간 수입금액 8천만원 이하인 기업에서 1억4백만원 이하인 기업으로 완화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을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조특법 §8의3)

- 내국법인이 무역보험기금에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 목적의 출연금을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10% 상당액을, 협력중견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 목적의 출연금을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5% 상당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적용시기> '26.1.1. 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

02

2025
세목별
핵심
개정세법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한도 확대*(조특법 §12의2)

- 연구개발 우수인력 근로자 수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한도 확대
※ (종전) 투자누계액의 50% + 상시근로자 수 × 1,500만원(청년·서비스업 2,000만원) →
(개정) 투자누계액의 50% + 상시근로자 수 × 1,500만원(청년·서비스업·우수인력 2,000만원)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분부터 적용

03

2025
개정세법
종전 개정사항
비교

■ 벤처투자목적회사를 통한 출자 시 세제지원(조특법 §13, §13의2)

-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받는 배당소득 등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내국법인이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하고 그 벤처투자목적회사가 벤처기업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 그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 중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국법인의 법인세에서 공제
<적용시기> '26.1.1. 이후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SPC)에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 배당소득 비과세 신설(조특법 §14)

- 벤처투자조합이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설
 - (특례 대상 소득) SPC가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 또는 적격 출자지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SPC가 취득한 내국법인 채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 * 벤처투자조합 출자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과 동일
 - (내용) 특례 대상 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개인의 SPC 배당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
- <적용시기> '26.1.1. 이후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SPC)에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 국제결제은행(BIS) 국내 투자소득 비과세* 신설(조특법 §21)

- * 정부가 가입주체인 국제금융기구는 가입·설립협정 등을 통해 국내원천 이자소득 등에 대해 비과세 적용, BIS는 각국 중앙은행이 가입주체로서 비과세 협정이 없음
- 국제결제은행(BIS)이 국내 예금, 환매채(RP) 등 원화표시 자산 투자 시 해당 투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적용
 - * 이자소득, 배당소득, 유가증권 양도소득
- <적용시기> '2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 확대(조특법 §25의6)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5%에서 10%로 상향
- <적용시기> '26.1.1. 이후 발생하는 비용 분부터 적용

■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25의7)

-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시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중소·중견기업에서 대기업까지 확대
-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25의8)

-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웹툰콘텐츠가 처음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적용시기> '26.1.1. 이후 발생하는 비용 분부터 적용

■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신설(조특법 §28의5)

- 중소기업이 취득한 스마트공장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에 대해서는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손금 산입 가능

<적용시기> '26.1.1. 이후 취득하는 설비투자 분부터 적용

■ 고용지원을 위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합리화(조특법 §29의8)

- 현재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까지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세액공제를 중단하고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하였으나, 앞으로는 처음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공제금액을 적용받도록 하고,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한 경우에도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도록 세액공제 구조 개편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고용증가인원수를 초과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만 세액공제 적용

1인당 ¹⁾ 공제액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우대 (청년등 ²⁾)	1,450(3년) → (1년차)700 + (2년차)1,600 + (3년차)1,700	1,550(3년) → 1,000 + 1,900 + 2,000	800(3년) → 500 + 900 + 900	400(2년) → 300 + 500
기본	850(3년) → (1년차)400 + (2년차)900 + (3년차)1,000	950(3년) → 700 + 1,200 + 1,300	450(3년) → 300 + 500 + 500	—

1) 중견·대기업의 경우 '고용증가인원 - 최소 고용증가인원' 기준

2) 청년(15~34세),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을 외국법인에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38의4)

○ 해외사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등을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을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 (출자법인)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한 내국법인
- (출자자산) 출자법인이 2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적용요건) ①출자법인 및 피출자법인이 각각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등
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 ②출자법인이 현물출
자일 다음 날부터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출자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80% 이상을 보유, ③외국법인은 외
국자회사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 계속 유지

○ (사후관리)

- 출자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등의 양도차익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
액 중 처분한 주식등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출자법인의 합병으로 합병법인이 주식
등을 승계하는 경우 제외)
- 출자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등의 양도차익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출자법인, 피출자법인 또는 외국자회사가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
우,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받은 외국자회사의 주식등 중 일정 비율 이상
을 처분하는 경우,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의 주식등을 일정 비율 미만으
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

<적용시기> '26.1.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58)

-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기부한 경우의 세액 공제율을 15%에서 40%로 상향
<적용시기> '26.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조특법 §63, §63의2)

- 기업이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성장촉진지역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10년 동안 감면대상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전부 감면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법인세의 50%를 감면하되, 이전기업이 지방에 투자한 금액 및 이전한 본사 또는 공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연계된 감면한도 적용
- 이전기업의 지방에 대한 투자·고용과 연계된 감면한도 신설*
* 지방 투자누계액의 70% + 지방근무 상시근로자 1인당 1,500만원(청년·서비스업 2,000만원)
- 감면받은 후 2년 내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추징

[지방이전 세액감면기간 확대]

구분	낙후지역 ¹⁾		그 외 지역	
	종전	개정	종전	개정
수도권 ²⁾	5년 100% + 2년 50%	5년 100% + 3년 50%	<감면 없음>	
수도권 연접지역 ³⁾	5년 100% + 2년 50%	5년 100% + 3년 50%	5년 100% + 2년 50%	5년 100% + 3년 50%
지방광역시	7년 100% + 3년 50%	7년 100% + 4년 50%	5년 100% + 2년 50%	5년 100% + 3년 50%
중규모도시 ⁴⁾	7년 100% + 3년 50%	10년 100% + 5년 50%	5년 100% + 2년 50%	5년 100% + 3년 50%
그 외	10년 100% + 2년 50%	10년 100% + 5년 50%	7년 100% + 3년 50%	7년 100% + 4년 50%

- 1) 인구감소지역, 성장촉진지역, 고용·산업위기지역
- 2) 중소기업이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공장 이전하는 경우만 적용(본사 이전은 미적용)
- 3) 당진시, 아산시, 원주시, 음성군, 진천군, 천안시, 춘천시, 충주시, 홍천군(내면 제외), 횡성군
- 4) 구미시, 김해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시, 청주시, 포항시

<적용시기> '26.1.1. 이후 공장·본사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5.12.31. 이전에 기존 공장·본사를 철거·폐쇄하는 등 지방이전에 착수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농지 현물출자 시 지원방식 전환

(조특법 §66, §68)

- 현재는 농업인이 농지 또는 초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였으나, 앞으로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

<적용시기> '26.1.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대상 지역에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추가(조특법 §71의2①)

- 인구감소지역과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추가

<적용시기> '25.11.28. 이후 취득하는 주택분부터 적용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조특법 §85의6②)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면서 인증 이후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이후 5년간 30%의 감면율이 적용되도록 감면기간을 확대

<적용시기> '26.1.1. 이후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부터 적용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합리화(조특법 §72)

- 과세표준 2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12% → 15%로 상향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비과세 종합저축 과세특례 가입대상 조정(조특법 §88의2)

- 비과세 종합저축 과세특례 가입대상을 65세 이상 거주자에서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인 65세 이상 거주자로 조정
 <적용시기> '26.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범위 합리화 (조특법 §88의5, §89의3)

- * 상호금융 조합원, 준조합원등의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 적용
-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원과 소득이 낮은* 준조합원등에 대해 예탁금등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3년 연장(~'28.12.31.)
- * 서민형ISA 가입조건과 동일한 총급여 5천만원(종합소득금액 3천8백만원) 적용
- 다만, 농어민 외 소득이 높은 준조합원등은 저율 분리과세('26년 5%, '27년부터 9%) 적용
 - 농·어·임업인 조합원,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가입자는 가입일 기준 ▲2028.12.31.까지 비과세, ▲2029년 5% 분리과세, ▲2030년부터 9% 분리과세
 -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 가입자는 가입일 기준 ▲2025.12.31.까지 비과세, ▲2026년 5% 분리과세, ▲2027년부터 9% 분리과세
- <적용시기> '26.1.1. 이후 가입·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 ISA 편입 가능 상품 명확화(조특법 §91의18③)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역외펀드) 제외

■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미추징 사유 추가(조특법 §91의22)

-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보호를 위해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중도해지 시 감면세액 미추징

■ 청년미래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비과세(조특법 §91의25)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00만원이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천

300만원 이하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비과세

■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 월세세액공제 허용(조특법 §95의2)

-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세대주에 대한 월세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월세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부부합산 한도 연 1,000만원)

<적용시기> '26.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7의9)

- 내국인이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토지 또는 건물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 내국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납부이연 또는 법인세 과세이연 특례 신설

<적용시기> '26.1.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합리화(조특법 §99의9)

-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요건 신설하고, 감면한도를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합리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분부터 적용

■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요건 완화(조특법 §99의10)

- 3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도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등 체납액 징수 특례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고, 체납액 기준도 5천만원 → 8천만원 이하로 상향

<적용시기> '26.1.1. 이후 특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생계형 채납자의 채납액 납부의무 소멸 특례 신설(조특법 §99의15)

- 생계가 곤란한 채납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채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5천만원 이하의 채납액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도록 하는 생계형 채납자의 채납액 납부의무 소멸 특례의 법적 근거 신설

<적용시기> '26.1.1. 이후 시행

■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개편(조특법 §100의32)

- 주주에 대한 배당을 통한 기업소득의 환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는 대상에 배당을 추가하고, 미환류소득 산정을 위하여 기업소득 중 기업이 환류하여야 하는 소득 비율의 범위를 종전의 60%~80%까지에서 65%~85%까지(자산의 투자 합계액을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10%~20%까지에서 20%~40%까지)로 상향

구 분		종전	개정
환류대상		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 지출액	(좌 동) + 배당
기업 소득 비율	투자포함형	60~80%	65~85%
	투자제외형	10~20%	20~40%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대학의 수익용 자산 대체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104의16)

- 대학 재정건전화 지원을 위해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 시 과세이연 대상에 유가증권(국내 상장법인 주식, 국·공채) 추가하고 과세이연 방식은 대체취득 유가증권 처분 시 익금산입(동종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 시 한정)
- 과세이연금액을 익금산입하는 사유로 사립학교의 경영자 등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추가

<적용시기> '2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추징 예외사유 신설(조특법 §104의19)

-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 취득 후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로 5년 이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종부세 추징 제외
<적용시기> '26.1.1. 이후 추징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부분복귀 후 추징사유 추가(조특법 §104의24)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부분복귀 후 국외사업장을 축소 완료하지 않은 경우 감면세액 전액 추징
<적용시기> '26.1.1. 이후 국내사업장을 신·증설하는 분부터 적용

■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신설(조특법 §104의27)

- 거주자가 배당성향, 배당금액 증가 등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14%부터 30%까지의 세율로 분리과세

① 적용요건 (① + ② + ③)	①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② 기준연도(2024년 사업연도) 대비 현금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을 것 ③ i)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ii) 배당성향 25% 이상 및 전년 대비 배당 10% 이상 증가
② 적용세율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3억원) 20%, (3억원~50억원) 25%, (50억 초과) 30%

<적용시기> '26.1.1. 이후 지급되는 배당분부터 적용

■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개편(조특법 §104의30)

- 우수 선·화주기업 세액공제 요건 개편(운송비용 → 물동량) 및 원양노선에 대한 추가공제 신설

구 분	증진	개정
기본	요건	요건
공제	금액	금액
	총 해상운송비용 중 국적선사에 지출한 운송비용이 40% 이상	총 해상물동량 중 국적선사를 이용한 물동량이 40% 이상
	국적선사에 지출한 운송비용의 1% + 전년대비 증가비용의 3%	국적선사에 지출한 운송비용의 0.5%

구 분		종전	개정
추가 공제	요건	<신 설>	원양 해상물동량 중 국적선사를 이용한 물동량이 25% 이상
	금액		국적선사에 지출한 원양 운송비용의 1%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 (조특법 §104의36)

-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원활한 재원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첨단 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

<적용시기> '26.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추정사유 합리화(조특법 §105)

- 영세율 추정사유를 농·임·어업인이 아닌 자가 영세율 적용받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등을 공급받는 경우까지 확대

<적용시기> '26.1.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중고차 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 신설(조특법 §108)

-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에 대해 공제한도(매출액 - 세금계산서 매입액) 신설하고, 2개 과세기간(1년) 간 이월공제 허용

<적용시기> '26.7.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121의26)

-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사업재편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채무상환 등을 위한 자산매각 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 (종전)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 (개정)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적용시기> '2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조특법 §126의2)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기본공제 한도 금액을 자녀 및 손자녀 등 부양가족 1명당 50만원(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인 경우 25만원) 씩 최대 100만원(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인 경우 50만원)까지 추가로 상향

기본공제 한도	종 전 (자녀수 무관)	개 정		
		무자녀	자녀 1인	자녀 2인 이상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300만원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	250만원	250만원	275만원	300만원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지역사랑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손금 확대(조특법 §136)

-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도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와 함께 추가 손금산입한도가 적용되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추가 손금산입 한도를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에서 20%로 상향

구 분		손금 한도	
일반 한도	기본한도	1,200만원(중소기업 3,600만원)	
	수입금액별 한도	수입금액	비율
		100억원 이하	0.3%
		100억원~500억원	0.2%
		500억원 초과	0.03%
추가 한도	문화비 지출분	일반한도의 20%	
	전통시장 + 지역사랑상품권	일반한도의 10% → 20%	

<적용시기> '26.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세부기술 신설 및 확대 등 (조특령 §21, [별표 7], [별표 7의2])

-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 분야가 신설되고 기존 미래형 운송·이동수단 분야가 확대됨에 따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및 인공지능형 자율운항 기술 등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센터가 국가전략기술 이외의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적용되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적용시기> '25.7.1. 이후 발생하는 비용 또는 투자 분부터 적용

다만, **인공지능** 분야와 미래형 운송·이동수단 분야 중 **인공지능형 자율운항**과 관련된 세부기술의 경우에는 '25.1.1. 이후 발생하는 비용 분부터 적용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특례 가액요건 상향(조특령 §68의2①)

-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 가액을 수도권 공시가격 4억원, 비수도권 공시가격 9억원으로 상향
<적용시기> '25.8.14.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감면 등 특례제도 적용기한 정리]

적용기한	내용(조문)
종료	-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 적용기한 종료 (§13의4)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 (§24)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종료 (§91의20) - 청년도약계좌 세제지원 적용기한 종료 (§91의22)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종료 (§104의25) -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종료 (§107의3)
연장 (2026.12.31.)	-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추가공제 적용기한 연장 (§29의8)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특례 적용기한 연장 (§98의9) - 농업임업인에 제공되는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기한 연장 (§106) -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106, §111) -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106의2) - 연안화물선운용 경우에 대한 유류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111의5)
연장 (2028.12.31.)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7) - 상생결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7의4) - 상생협력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8의3) - 지방 경제산업 특구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12의2·§64·§99의9·§121의8·§121의9·§121의17·§121의20~22) - 벤처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13) -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예의 출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13의2)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등 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13의3) - 벤처투자 세제지원 특례 적용기한 연장 (§14, §16) - 벤처기업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적용기한 연장 (§15) - AI 우수인력 등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18의3) - 영상콘텐츠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25의6) -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25의7) - 투자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27) -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기한 연장 (§29의4) -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29의8) -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60) - 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61) - 공장·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기업의 소득·법인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63, §63의2)

적용기한	내용(조문)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69의2) •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69의3) • 영농자녀 자경농지 증여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71) •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72)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적용기한 연장(§74) • 개발제한구역 토지·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77의3) • 사회적기업·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85의6) • 중소기업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85의8) •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87) •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87의2) • 비과세 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88의2)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96) •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96의3) • 농어촌주택등 취득시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99의4) •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적용기한 연장(§100의32) •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104의30)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104의31) •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105) •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106) •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106) • 행복기숙사 기숙사비 등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106) • 온실가스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106) • 전기·수소 이용 시내·농어촌·마을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106) •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107의2) • 중고차 등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108) •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117) •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121의33)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126의2) • 현금영수증 가맹점 소득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126의3) • 지역사랑상품권 업무추진비 적용기한 연장(§136) • 해저광물자원개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140)

01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

02

2025
세목별
핵심
개정세법

03

2025
개정세법
종전·개정
상황
비교

0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 개선(국조법 §6②)**

- 이중 부과 소득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과세당국에 정상가격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때 국외특수관계인 과세소득 조정 입증 서류 제출
<적용시기> '26.1.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 **거주자증명서 발급대상자 확대(국조법 §41②)**

- 과세당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으로서 그 수익적 소유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집합투자기구가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등의 사유로 그 수익적 소유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명의로 그 증명서 발급 가능
<적용시기> '26.1.1. 이후 발급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국조법 §73의2~§73의7, §74, §75, §77, §79~§81)**

- 특정 사업연도에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구성기업들에 적용되는 세율이 최저한세율(15%) 미만인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실효세율은 국내구성기업들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을 국내구성기업들의 해당 사업연도의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하고,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구성기업들에 적용되는 실효세율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조정대상조세는 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하도록 하며,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은 국내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합계액에서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
- 각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은 최저한세율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실효세율을 차감하여 계산한 비율에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 초과이익 금액을 곱한 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

액을 더하여 계산

- 국내 저율과세구성기업은 각 사업연도 내국추가세액을 각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한 금액인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내국추가세액의 배분은 각 국내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에 대한 기여도와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배분하는 방법 또는 내국추가세액의 배분에 대하여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모든 국내구성기업이 합의하여 신고구성기업이 지정하는 하나 이상의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하는 방법 중 신고구성기업이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배분
 - 최종모기업이 아닌 국내 투자구성기업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과는 별도로 국내 투자구성기업들의 내국추가세액을 계산
 -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에 대해서도 각 국내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와 그 직전 2개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합계의 평균이 1천만유로 미만이고 같은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합계의 평균이 1백만유로 미만인 경우는 각 국내구성기업의 각 사업연도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적용
 -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에 대해서도 소수지분구성기업으로 이루어진 소수지분 하위 그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수지분 하위 그룹을 별개의 다국적기업그룹으로 보는 특례 등을 적용
-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 적용기한 신설(국조법 §111①)

-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의 적용대상 및 적용에 따른 대상조세 납부대상에 관한 용어를 통일하는 한편, 해당 규정을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7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내 주주구성기업에서 피지배외국법인으로의 대상조세 배분에 한하여 적용
- <적용시기> '26.1.1. 이후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추가세액 배분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01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

02

2025 세목별 핵심 개정세법

03

2025 개정세법 종전 개정사항 비교

기(既) 개정사항 중 2026년도부터 시행

■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화**
(소득법 §156의2, 법인법 §98의4)

-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 신청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거주자 판정기준 보완(소득령 §4)**

- 1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외에 전년도부터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도 거주자로 판정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 **고가주택 2주택자의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구체화(소득령 §53)**

-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원 초과) 2주택자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을 전세보증금 합계 12억원 초과로 규정
<적용시기> '2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장애인 추가공제 적용 증빙 인정 서류 확대(소득령 §107)**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의 장애인 추가공제 적용을 위한 증빙 인정 서류에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 추가
<적용시기> '26.1.1. 이후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 **퇴직소득세액 정산방법 합리화(소득령 §202의2, §203)**

- 퇴직소득세액 정산 시점의 산출세액에 맞추어 이연퇴직소득세액을 재계산하고 이를 토대로 정산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며, 퇴직소득세액 정산 이후 이연퇴직소득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정산 당시 변경사항을 반영한 이연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적용시기> '26.1.1. 이후 퇴직(제43조제2항(퇴직소득중간지급)에 따라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소득령 [별표 3의3])

- ❶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❷사진 처리업, ❸납시장 운영업, ❹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등 4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138개 → 142개 업종)

<적용시기> '26.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

■ 가상자산 관련 과세자료 제출 의무 강화

(법인법 §120의4, §124, 소득법 §164의4, §177)

- (제출의무 대상 범위 보완) 자료제출 대상 거래기간 중 신고 직권말소·유효기간 경과 사업자 포함
-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거래내역 미제출 시 국세청장에게 시정명령 및 과태료(최대 2,000만원) 부과 근거 마련

<적용시기> (법인세법) '25.1.1. 이후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적용

(소득세법) '27.1.1. 이후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적용

■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이행근거 마련(국조법 §36, 국조령 §75)

-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과 체약당사국 간 상호주의에 따른 금융거래 자동정보교환 범위에 '암호화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를 추가
- ▲금융거래 및 암호화자산 거래의 보고대상 정보를 구체화, ▲보고대상 암호화자산을 암호화자산 중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법정통화 등을 제외, ▲암호화자산 거래 유형을 보고대상 암호화자산에 대한 교환, 이전으로 정의하고, 금융거래 및 암호화자산 거래에 준하는 거래를 투자자문업자·투자일임업자·집합투자기구 등이 취급하는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거래, 파생상품시장 거래 및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법정통화에 대한 거래 등

<적용시기> (교환정보 요청·제출) '27.1.1. 이후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

(실사) '26.1.1. 이후 금융거래회사등이 실시하는 분부터 적용

※ (실사에 관한 경과규정) '26.1.1. 현재 금융거래등 상대방에 대해서도 적용

2025

핵심 개정세법

03

2025 개정세법
종전-개정사항 비교
(상세본)

2025 개정세법 종전 - 개정사항 비교

01

국세기본법

01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

(국기법 §10, 국기령 §5의2)

종 전	개 정
□ 납부고지서 우편송달 방법 ○ (원칙) 등기우편 ○ (예외) 일반우편 - 요건 : 고지세액 50만원 미만 - 대상 : ①~③의 납부고지서 ① 「소득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예정고지세액의 납부고지서 ③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후 무(과소)납부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 <추 가>	□ 일반우편 송달범위 확대 ○ (좌 동) ○ 일반우편 송달 기준세액 상향 및 대상 추가 - 50만원 → 100만원 - ①~④의 납부고지서 ①~③ (좌 동) ④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이후 무(과소) 납부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

<개정이유> 행정비용 절감 및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대상 확대) '26.1.1. 이후 납부고지서 발송 분부터 적용
(기준세액 상향) 영 시행일 이후 납부고지서 발송 분부터 적용

01

2026
발라지는
세금제도

02

2025
세무별
핵심
개정세법

03

2025
개정세법
종전-개정사항
비교

02

독촉장 송달비용을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

(국기법 §21, §47의4, §47의5)

종 전	개 정
☐ 납부지연 가산세(① + ②) ① 지연 이자 상당액* ※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② 체납에 대한 제재 - 미납세액 × 3% <추 가>	☐ 독촉장 송달비용 추가(① + ② + ③) ○ (좌 동) ③ 독촉장 송달비용 ※ (1) 전자송달은 비용 없음 (2)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3) 지정납부기한 경과시 송달비용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6.7.1.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03

미분할 상속재산 및 우회상속 관련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가산세 면제 사유 추가(국기법 §47의2, §47의3, §47의4)

종 전	개 정
☐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가산세 면제 사유 <추 가>	☐ 면제 사유 추가 ○ 미분할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분할기한 내 기한 후 신고·납부 등을 하는 경우 분할로 증가된 세액 ※ 기한 후 신고시 당초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무신고가산세 등 적용 ○ 우회상속의 사유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로서,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납부 등으로 증가된 세액 ※ 우회상속인의 우회상속 외 상속세 무신고 등은 가산세 적용

<개정이유> 납세편의 및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가산세 면제 사유 추가

<적용시기>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01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

02

2025
세목별
핵심
개정세법

03

2025
개정세법
종전·개정사항
비교

04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법 개편

(국기법 §47의4, §47의5)

종 전	개 정
□ 납부지연 가산세(① + ②) ① 지연 이자 상당액 — 법정납부기한~납부일* : 매 1일(日) 경과시마다 미납세액 $\times 0.022\%$ * 납부고지일~지정납부기한 기간 제외 ② 체납에 대한 제재 — 미납세액 $\times 3\%$	□ 지연이자 계산 방식 개편 ① 체납 이후 산출 단위 변경 — 법정납부기한~납부고지일 : 매 1일(日) 경과시마다 미납세액 $\times 0.022\%$ — 지정납부기한~납부일 : 매 1월(月) 경과시마다 미납세액 $\times 0.67\%$ ② (좌 동)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6.7.1.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 다만, '26.7.1. 전에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26.7.1.을 지정납부
 기한으로 보아 개정규정 적용

<경과조치> '26.6.30. 이전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은 종전 규정을 적용

05

확정신고 기한 내 예정·중간신고의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시 가산세 감면 제도 명확화(국기법 §48)

종 전	개 정
☐ 예정·중간신고의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시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50% 감면 ○ (수정신고 요건) ❶&❷ ❶ 예정·중간신고 기한내 과소·초과신고 ❷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수정신고 한 경우 ○ (기한후신고 요건) ❶&❷ ❶ 예정·중간신고 기한내 예정·중간신고 불이행 ❷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 요건 명확화 ○ (좌 동) ❶ (좌 동) ❷ 확정신고의 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중 간신고를 수정신고한 경우 ○ (좌 동) ❶ (좌 동) ❷ 확정신고의 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중 간신고의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

<개정이유> 가산세 감면제도 합리화

06

고충민원 신청인도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 포함 (국기법 §59의2)

종 전	개 정
☐ 국선대리인 신청인 범위 ○ 이의신청인, 심사·심판청구인, 과세전적부 심사 청구인 등 <추 가>	☐ 대리인 신청대상 확대 ○ (좌 동) ○ 고충민원* 신청인 * 심사·심판청구 등을 청구기한내 제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과세관청에 직권으로 필 요한 처분을 요청하는 민원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01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

02

2025
세무별 핵심 개정세법

03

2025
개정세법 종전·개정사항
비교

07

권리보호 심의 요청 관련 절차 신설

(국기법 §81의19)

종 전	개 정
<신 설>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 관련 절차 ○ (보정요구) 심의 요청* 내용에 미비점이 있는 경우 1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 가능 *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의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 ○ (지연통지) 신청기한(20일)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해당 사유 등을 통지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보호

<적용시기> '26.1.1. 이후 세무조사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02

국세징수법

01

채납자에 대한 실태확인 근거규정 마련

(국징법 §10의2, 국징령 §8의2)

종 전	개 정
<신 설>	□ 채납자 실태확인 범위 ○ (실태확인) 채납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확인종사자로 하여금 실태확인 실시 가능 ○ (확인범위) ①~④ ① 채납자의 실태확인을 위해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질문 ② 채납자의 납부의사 또는 납부계획 확인 ③ 채납액 관련 설명을 위한 전화 또는 방문 ④ ①~③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 ○ (실태확인원 의무) 실태확인원 또는 실태확인원이었던 자는 실태확인 관련 정보의 목적 외 사용 및 타인 제공 금지

<개정이유> 채납 정리 효율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실태확인 실시분부터 적용

01

2026
발라지는
세금제도

02

2025
세모별
핵심
개정세법

03

2025
개정세법
종전 개정사항
비교

02

가상자산 매각 위탁 근거 마련

(국징법 §103)

종 전	개 정
☐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 하게 할 수 있는 업무 ○ 공매 ○ 수의계약 ○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 금전의 배분	☐ 대행 가능 업무 추가 ○ (좌 동)
<추 가>	○ 가상자산 매각

<개정이유> 가상자산 매각 효율성 제고

<적용시기> '26.10.1. 이후 가상자산을 매각하는 분부터 적용

03

소득세법

01

임목 벌채·양도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소득법 §12)

종 전	개 정
☐ 임목 벌채·양도소득 비과세 ○ (대상) 조림기간 5년 이상 임지의 임목 벌채·양도소득 ○ (한도) 연 600만원	☐ 비과세 한도 확대 ○ (좌 동) ○ 연 3천만원

<개정이유> 임업 종사자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01

2026
발라지는
세금제도

02

2025
세목별
핵심
개정세법

03

2025
개정세법
종전 개정사항
비교

02

육아휴직수당등 비과세 대상 및 한도 확대

(소득법 §12, 소득령 §10의2)

종 전	개 정
☐ 육아휴직수당등 비과세 대상 ①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 ②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③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등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 <추 가>	☐ 대상 확대 ①~③ (좌 등) - 「사학연금법」 특례 적용 교직원이 정관 등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 포함
☐ 육아휴직수당등 비과세 한도 ①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 : 한도 없음 ②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 한도 없음 ③ 사립학교 사무직원 또는 특례적용 교직원 이 정관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 월 150만원	☐ 한도 확대 ①·② (좌 등) ③ 휴직일~3개월 : 월 250만원 4개월~6개월 : 월 200만원 7개월~ : 월 160만원

<개정이유> 자녀 양육부담 완화

<적용시기> (비과세 대상) '26.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비과세 한도)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03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소득법 §12)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종교인소득에서 비과세되는 보육수당 ○ (대상)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 (한도) 월 20만원	☐ 자녀 수에 따라 비과세 한도 확대 ○ (좌 동)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개정이유> 자녀 양육부담 완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01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

02

2025 세목별 핵심 개정세법

04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을 조정

(소득법 §17)

종 전	개 정
☐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방식 ① 배당소득금액 계산 시 배당소득에 배당가산을 곱한 금액(배당가산액)을 가산 -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 × 10% ② 배당가산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배당세액공제)	☐ 배당가산을 조정 ○ (좌 동) -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 × 11%* * 변경된 법인세 최저세율(10%)을 기준으로 가산율 산정($\frac{10\%}{1-10\%} \approx 11\%$) ○ (좌 동)

<개정이유>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03

2025 개정세법 종전·개정사항 비교

05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 소득에 연금계좌 소득 추가

(소득법 §57의2①·②·§129⑧·⑨·⑩)

종 전	개 정
☐ 종합과세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 소득* ※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간접 투자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로 한정)이 포함된 경우 ○ 종합소득금액 <추 가>	☐ 공제 대상 소득에 연금계좌 소득 추가 ○ (좌 동) ○ 퇴직소득금액
☐ 원천징수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 소득* ※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간접 투자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로 한정)이 포함된 경우 ○ 배당소득 <추 가>	☐ 공제 대상 소득에 연금계좌 소득 추가 ○ (좌 동) ○ 이자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득 ○ 기타소득

<개정이유> 연금계좌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 '26.7.1. 이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06

개인투자자에 대한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 변경

(소득법 §57의2②·③)

종 전	개 정
□ 종합소득과세 시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 ○ (공제금액)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한계세율을 고려한 비율을 곱한 금액 ○ (공제한도금액) $A \times B / C$ ※ A : 종합소득산출세액 B : 펀드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합계액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한 소득으로 한정) C : 종합소득금액 ○ (이월공제) 공제한도금액 초과분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 적용	□ 공제 적용 방식 변경 ○ 원천징수 시 계산한 간접투자 외국법인세액 공제금액의 합계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삭 제>

<개정이유> 납세 편의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01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

02

2025
세무별
핵심
개정세법

03

2025
개정세법
종전+개정
상황
비교

07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소득법 §59의4③)

종 전	개 정
☐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 (적용범위) 본인 및 아래 기본공제대상자 - 장애인(나이 및 소득 요건 없음*) * 단,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18세 미만 한정 - 직계비속등 (나이 요건 없으나 소득 요건* 있음) *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이하 ○ (공제율) 15% ○ (교육비 한도) - 본인, 장애인 : 한도 없음 - 대학생 : 900만원 - 취학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 : 300만원	☐ 대상 확대 ○ (좌 동) - 소득요건 폐지 ○ (좌 동)

<개정이유> 자녀 교육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08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지원

(소득법 §59의4③)

종 전	개 정
☐ 교육비 세액공제 ○ (공제율)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 (공제대상) - (본인) 대학(원) 학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 (취학전 아동) 유치원·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 체육시설 교육비 등 - (초·중고·대학생)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등 <추 가>	☐ 교육비 세액공제 ○ (좌 동) ○ 공제대상 확대 - (좌 동) - (좌 동) • 예능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과제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 초등학생 한정)

<개정이유> 자녀 양육부담 완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01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

02

2025 세목별 핵심 개정세법

03

2025 개정세법 종전·개정사항 비교

09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보완

(소득법 §96③)

종 전	개 정
☐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시가보다 높게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 양도가액 - 증여가액 * 양수·양도 대가와 시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 그 차액에 과세 <추 가>	☐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보완 ☐ (좌 동)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배당 등으로 소득 처분된 경우 : 양도가액 - 소득처분금액

<개정이유>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0

양도소득 이월과세 적용범위 합리화

(소득법 §97의2①)

종 전	개 정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배제 범위 * 수증자가 증여받은 자산을 10년(주식의 경우 1년) 내 양도시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산 ☐ 증여자인 배우자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추 가>	☐ 적용배제 범위 확대 ☐ (좌 동) ☐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개정이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1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 확대

(소득법 §118의9~§118의18)

종 전	개 정
☐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 (요건) 국외전출자(① + ②) ①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 기간 중 국내 주소·거소 기간 합계가 5년 이상 ② 출국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연도 종료일 기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인 대주주 <추 가> ○ (과세대상 양도소득) - 주권상장법인 주식등 - 비상장법인 주식등 <추 가>	☐ 과세대상에 국외주식등 포함 ○ (좌 등) - 국외주식등의 경우 대주주 요건 미적용 ○ (좌 등) - 국외주식등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7.1.1. 이후 출국하는 분부터 적용

01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

02

2025
세목별
핵심
개정세법

03

2025
개정세법
종전 개정사항
비교

12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소득법 §129)

종 전	개 정
□ 사적연금(본인 납입액 중 세액공제분 + 운용 수익) 연금수령시 분리과세 세율 ○ 연금소득자 나이별 세율(연금수령일 기준) - 70세 미만 : 5%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 - 80세 이상 : 3% ○ 사망까지 종신계약에 따라 연금 수령 시 : 4%(종신계약시 수령나이별 세율과 4% 중 낮은 세율 적용) □ 이연퇴직소득(회사 부담분) 연금수령시 분리과세 ○ 연금 수령연차에 따른 세액(연금수령시 세액 감면) - 10년 이하 : 연금의 수령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의 70% - 10년 초과 : 연금의 수령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의 60% <신 설>	□ 종신계약시 세율 인하 ○ (좌 동) ○ 4% → 3%로 인하 □ 장기수령시 감면을 확대 ○ (좌 동) - 10년 초과 20년 이하 : 연금의 수령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의 60% - 20년 초과 : 연금의 수령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의 50%

<개정이유> 노후생활 안정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연금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13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 신설

(소득법 §144의2②)

종 전	개 정
☐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 ○ (대상) 근로소득세액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 초과시 ○ (방법) 3개월(2~4월)에 나누어 원천징수 가능	☐ 사업소득 연말정산시 분납 제도 도입 ○ 사업소득세액 추가 ○ (좌 동)

<개정이유>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의 납부 부담 완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01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

14

비거주자 제한세율 특례 신청서 제출 의무 신설

(소득법 §156의6, 소득령 §207의8③, 법인법 §98의6, 법인령 §138의7③)

종 전	개 정
☐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신청서등* 보관 *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 (보관기간) 원천징수 납부 기한* 다음날부터 5년 * 지급일(원천징수일) 다음달 10일 <신 설>	☐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받은 신청서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제출기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 *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과 동일

<개정이유>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의 적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02

2025 세무별 핵심 개정세법

03

2025 개정세법 종전 개정사항 비교

15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의 발급의무 규정 보완

(소득법 §162의2②, §162의3③)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가맹점의 발급의무 ○ (원칙)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거부 및 사실과 다른 발급 금지 ○ (예외) 다른 사업자 매출과 합산 발급 가능 － (대상) 대규모점포, 체육시설 － (방법) 판매시점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운용 등 □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발급의무 ○ (원칙)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및 사실과 다른 발급 금지 <신 설>	□ 합산발급 대상 추가 ○ (좌 동) ○ 대상 및 방법 확대 － 대규모점포, 체육시설, 여행업 등* * 구체적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설비 또는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운용 등* * 구체적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합산발급 예외 허용 ○ (좌 동) ○ (예외) 다른 사업자 매출과 합산 발급 가능 － (대상) 대규모점포, 체육시설, 여행업 등 － (방법)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설비 또는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운용 등

<개정이유> 사업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6

국외주식 거래명세서 수집 근거 마련

(소득법 §174의2)

종 전	개 정
☐ 파생상품, 주식 거래내역 제출 ○ (대상) 금융투자업자 ○ (제출주기) 분기별* * 거래 발생일이 속하는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주권상장법인 대주주 주식거래 내역은 요청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 ○ (제출자료)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다음 자료 ① 파생상품등 거래내역 ② 장외매매거래 중개시 거래내역 ③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주식등 거래내역	☐ 제출 자료 추가 ○ (좌 동) ③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주식등 거래내역, 국외주식 거래내역

<개정이유> 국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26.1.1. 이후 발생하는 거래 분부터 적용

01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

02

2025
세무별
핵심
개정세법

03

2025
개정세법
종전-개정
상황
비교

17

수용 시 주택부수토지 판단 기준일 조정

(소득령 §154⑦·§167의5·§168의12)

종 전	개 정
☐ 주택부수토지 인정범위 ○ (배율*) 토지의 소재지·용도지역별 상이 *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해당 배율을 곱하여 산정된 면적 이내의 토지만 주택부수토지로 인정 - 도시지역 내 토지 : ① 또는 ② ① 수도권 내 주거·상업·공업지역 : 3배 ② 수도권 내 녹지 및 수도권 밖 : 5배 - 그 밖의 토지* : 10배 *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 (기준일) 양도일 <단서 신설>	☐ 예외 신설 ○ (좌 동) ○ 토지수용시 용도 지역 판정기준일 예외 신설 -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 : 사업인정 고시일 직전일

<개정이유> 수용되는 토지 등에 대한 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2025. 11. 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8

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중과 배제 기간 연장

(소득령 §167의3)

종 전	개 정
☐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 배제 및 주택수 제외 ○ (대상주택)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 수도권 밖의 지역 소재 - 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원 이하 - '24.1.10.~'25.12.31. 기간 중 취득	☐ 적용기한 연장 - '25.12.31. → '26.12.31.

<개정이유>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19

퇴직소득 세액정산 방법 보완

(대통령령 제35349호 소득령 §203)

종 전	개 정
☐ 퇴직소득 세액정산 방법 개정 ○ (내용) 계산방법 보완 - (~25.12.31) ①전체 산출세액* - ②기 지급 산출세액** * 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퇴직소득세액 ** 기납부 또는 이연된 세액 - (26.1.1.~) ①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퇴직소득세액 - ②(정산전 이연퇴직소득세액* + 정산전까지 원천징수세액) * 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세액을 이연퇴직소득 비율로 안분 계산 ○ (대상) 기 지급된 퇴직소득 중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자	☐ 적용대상 축소 ○ (좌 동) ○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자 중 '25.12.31. 이전 방식에 따라 계산 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만 '26.1.1. 이후 계산방식 적용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6.7.1.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20

연말정산 간소화 관련 자료집중기관 추가

(소득령 [별표 4])

종 전	개 정
☐ 의료비세액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집중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추 가>	☐ 자료집중기관 추가 ○ 보건복지부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2025.11.28.)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01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

02

2025
세목별
핵심
개정세법

03

2025
개정세법
종전+개정
상황
비교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및 세액공제 시행시기 유예

21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시기 유예

(법률 제19196호 소득법 §81의11·부칙, 법률 제19193호 법인법 §75의7·부칙)

종 전	개 정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상용근로소득 : 매월 ○ 시행시기 － '26.1.1. 이후	☐ 시행시기 유예 ○ (좌 동) ○ 시행시기 － '27.1.1. 이후

<개정이유> 납세협력 부담 완화

22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간 유예

(법률 제19199호 조특법 §104의5·부칙)

종 전	개 정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 (적용대상)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소규모사업자 및 이를 대리하는 세무대리인 ○ (공제금액) 기재된 소득자 수당 200원 ○ (공제한도) 연간 300만원(세무회계법인 600만원), 최소공제액 1만원 ○ (적용기간) '26.1.1.~'27.12.31.	☐ 적용기간 유예 ○ (좌 동) ○ '27.1.1.~'28.12.31.

<개정이유> 납세협력 부담 완화

04

법인세법

01

법인투자자에 대한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 합리화
 (법인법 §15②, §57의2①·②·③)

종 전	개 정
☐ 익금의 범위 ○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 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이익 ○ 익금으로 보는 금액 － 특수관계인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유가증권 매입 시 시가와 매입가 차액 상당액 등 <추 가> ☐ 법인세 신고 시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 ○ (공제금액)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과세표준 한계세율을 고려한 비율을 곱한 금액 ○ (공제한도금액) $A \times B / C$ － A : 산출세액 － B : 펀드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합계액 *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한 소득에 한정 － C : 과세표준 ○ (이월공제) 공제한도금액 초과분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 적용	☐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추가 ○ (좌 동) ○ (좌 동) － 세액공제 대상인 간접투자 외국법인세액(㉠) ☐ 공제한도금액 계산 방식 변경 ○ (좌 동) ○ (좌 동) － (좌 동) － B : 펀드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합계액 + ㉠ *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한 소득 여부와 무관 － (좌 동) * 외국납부세액을 익금의 범위에 포함함에 따라 A, C에도 ㉠이 반영되는 결과 ○ (좌 동)

<개정이유> 법인의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합리화

<적용시기> '26.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01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

02

 2025
세무별
핵심
개정세법

03

 2025
개정세법
종전 개정사항
비교

02

삼각합병 시 합병대가의 범위 명확화

(법인법 §16②)

종 전	개 정
☐ 합병대가의 범위 ○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 합병법인의 주식 - 완전모회사인 내국법인의 주식 ○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액	☐ 범위 명확화 ○ (좌 동) - 완전모회사인 법인의 주식* * 완전모회사인 외국법인 주식 포함 ○ (좌 동)

<개정이유> 합병대가의 범위 명확화

03

사회적기업이 지출한 기부금 손금인정 확대

(법인법 §24③)

종 전	개 정
☐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 (특례기부금) 소득금액 × 50% ○ (일반기부금) (소득금액 - 특례기부금) × 10% - 사회적기업의 경우 20%	☐ 사회적기업의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상향 ○ (좌 동) ○ (좌 동) - 20% → 30%

<개정이유> 사회적기업의 기부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4

배당금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

(법인법 §51의2)

종 전	개 정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대상)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 등 <추 가> ○ (내용)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 시 배당금액 소득공제 ○ (중복배제) 배당받은 주주 등의 소득·법인 세가 비과세될 경우 소득공제 적용 배제 －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기업으로서 동 업자들에게 소득·법인세가 과세되는 경 우에는 소득공제 적용 <추 가>	☐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 등 ○ (좌 등) －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 ○ (좌 등) － 벤처투자회사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 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

<개정이유> 벤처투자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1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

02

2025
세무별 핵심 개정세법

03

2025
개정세법
종전 개정사항
비교

05

법인세율 환원

(법인법 §55①)

종 전

□ 법인세율 및 과표구간

○ (일반법인)

과 표	세 율
0~2억원	9%
2억원~200억원	19%
200억원~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4%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 ①~③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 ① 지배주주등 지분율 50% 초과
- ②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임대수입·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 ③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과 표	세 율
200억원 이하	19%
200억원~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4%

개 정

□ 법인세율 상향 조정

○ (좌 동)

과 표	세 율
0~2억원	10%
2억원~200억원	20%
200억원~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

○ (좌 동)

과 표	세 율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

<개정이유> 응능부담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6

연결납세 취소·배제시 사후관리 규정 정비

(법인법 §76의9, §76의12)

종 전	개 정
☐ 연결납세방식 취소·배제시 결손금 사후관리 ○ (기한) 승인 후 5년 이내 취소·배제시 ○ (공제받은 법인) 기공제한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을 익금산입 <단서 신설> ○ (결손 법인) 다른 연결법인이 공제받은 결손금을 손금산입 <단서 신설>	☐ 결손금 사후관리 예외 규정 신설 ○ (좌 동) ○ (좌 동) - 다만, 결손금에 대해 대가를 지급한 경우 익금산입 제외 ○ (좌 동) - 다만, 결손금에 대해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손금산입 제외

<개정이유> 연결납세 사후관리 합리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취소·배제되는 분부터 적용

01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

02

2025
세목별
핵심
개정세법

03

2025
개정세법
종전 개정사항
비교

07

연결법인 합병 시 이월결손금·자산처분손실 공제범위 등 규정 정비

(법인법 §76의13③, §76의14②, §113⑤)

종 전	개 정
☐ 연결법인이 적격합병한 경우 이월결손금, 자산처분손실 공제한도 ○ 연결모법인이 승계받은 이월결손금 :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연결모법인 적격합병 후 5년 내 발생한 자산처분손실 - (합병 전에도 보유하던 자산) - 합병 전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합병으로 승계받은 자산) -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연결자법인에 대한 규정 보완 ○ 연결모법인 → 연결법인 ○ 연결모법인 → 연결법인 - (좌 동)
☐ 연결법인이 합병*한 경우 구분경리 * 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법인과 합병·분할합병한 경우만 해당 ○ 연결모법인이 합병으로 승계 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구분경리	☐ 연결자법인에 대한 규정 보완 ○ 연결모법인 → 연결법인

<개정이유> 연결법인의 이월결손금 등 공제 명확화

08

연결법인 가산세 규정 정비

(법인법 §76의21)

종 전	개 정
☐ 연결모법인의 가산세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등 <추 가>	☐ 가산세 항목 추가 ○ (좌 동)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개정이유> 연결법인 가산세 합리화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9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 범위 명확화

(법인법 §93)

종 전	개 정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 ○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①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되었으나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되지 않은 금액 ②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 등이 해당 국외지배주주가 출자한 출자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 <추 가>	☐ 국내원천 배당소득 범위에 장외파생상품 배당 상당액 추가 ○ (좌 동) ○ 장외파생상품 거래에서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기초로 지급하는 금액

<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

01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

02

2025
세무별
핵심
개정세법

03

2025
개정세법
종전-개정
사항
비교

10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 중 증여 범위 명확화

(법인법 §93)

종 전	개 정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 ○ 국내 자산·사업과 관련되거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보험금·보상금, 손해배상금, 위약금, 당첨금품, 상금, 포상금 등 ○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 받아 생기는 소득 ○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 특수관계인 보유 내국법인 주식의 부당행위거래로 인한 가치증가분 ○ 가상자산소득	☐ 증여의 범위 명확화 ○ (좌 동) ○ 현저히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이전받는 경우로서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 포함 ○ (좌 동)

<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

11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미제출 시 과태료 신설

(법인법 §94의2④, §124②)

종 전	개 정
<신 설>	☐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제출의무 불이행 에 대한 과태료 신설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기본 사항, 외국 본사현황 및 국내 다른 지점 현황, 국내 거래처 현황 등 ○ 미제출·거짓제출시 최대 1,000만원* 부과 * 구체적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개정이유> 자료제출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분부터 적용

12

인건비 제한 적용대상 비영리법인 범위 명확화

(법인령 §56⑪)

종 전	개 정
□ 비영리법인 임직원 인건비 한도* 적용대상 * 임직원별 연간 총급여 8천만원 이하 ① 수익사업 소득의 50%를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장학법인* *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중 5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 ② 수익사업 소득의 50%를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사회복지법인 등* * 사회복지법인, 고유목적사업·일반기부금 지출액 중 8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 ③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5개 사업연도 동안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합계액의 50%를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	□ 임직원 인건비 한도 적용 비영리법인 대상 명확화 ○ (좌 동) ○ (좌 동) ○ ① 및 ②에 해당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5개 사업연도 동안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합계액의 50%를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

<개정이유> 임직원 인건비 한도 적용 비영리법인 대상 명확화

01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

02

2025
세목별 핵심 개정세법

03

2025
개정세법
종전 개정사항
비교

13

CR리츠가 매입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법인령 §92의2②)

종 전	개 정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과세 배제 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추 가>	☐ 추가과세 배제 주택 추가 ○ (좌 동) ○ CR리츠가 '25.1.1.~'25.12.31. 중 매입한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취득 후 5년 이내 양도분에 한함)

<개정이유>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2025.11.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4

내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개선

(법인령 §111③)

종 전	개 정
☐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국채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 ○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이하 “예탁자”)가 소유하고 있는 국채등 : 한국예탁결제원 ○ 예탁자가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국채등 : 예탁자 <추 가>	☐ 원천징수의무자 범위 추가 ○ (좌 동) ○ (좌 동) - 다만, 국제예탁결제기구*가 예탁자인 경우로서 내국법인으로부터 예탁받은 국채등 : 해당 내국법인 * 한국예탁결제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외국법인

<개정이유> 국채 등 거래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2025.11.28.) 이후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05

부가가치세법

01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범위 확대

(부가법 §55, 부가령 §100)

종 전	개 정
☐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업종 ○ 음식점업 ○ 부동산중개업 ○ 보건업(병원, 의원 한정) ○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의사업, 약사업 등 <추 가>	☐ 제출 의무 업종 추가 ○ (좌 등) ○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개정이유> 과세기반 확충

<적용시기> '26.4.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02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

(부가법 §60)

종 전	개 정
☐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 ○ (대상) ① 가공세금계산서등 발급·수취 ② 사업자가 아닌 자의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 ○ (세율)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	☐ 가산세율 상향 ○ (좌 등) ○ (세율) 3% → 4%

<개정이유> 조세탈루 방지

<시행시기> '26.1.1. 이후 가공세금계산서등을 발급·수취하는 분부터 적용

01

2026
발라지는
세금제도

02

2025
세목별
핵심
개정세법

03

2025
개정세법
종전·개정
상황
비교

03

납세의무자에게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의무 부과(부가법 §74)

종 전	개 정
☐ 납세의무자의 자료제출 등 의무 및 이에 따른 과태료 ○ (목적) 납세보전 또는 조사 ○ (대상자) 납세의무자 ○ (의무) 장부·서류 등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과태료) 2천만원 이하	☐ 자료제출 범위 확대 ☐ ○ (좌 동) ○ (의무) 장부·서류 등(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포함)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좌 동)

<개정이유> 조세탈루 방지

<시행시기> '26.1.1.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출하도록 하는 분부터 적용

04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 적용기한 연장
(부가령 §84②·③)

종 전

☐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 면세농산물 구입시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 공제율

구 분		공제율
음 식 점 업	① 과세유흥장소 경영자	2/102
	② 연매출액 4억원 이하 개인사업자 (‘26.12.31.까지)	9/109
	③ 연매출액 4억원 초과 개인사업자	8/108
	④ ①~③ 외의 사업자	6/106
제 조 업	① 과자점업, 도정업 등 개인사업자	6/106
	② ① 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4/104
	③ ①~② 외의 사업자	2/102
기 타		

○ 공제한도

구분	연매출액	기본	우대	
			음식점	그 외
개 인 사 업 자	2억원 이하	50%	75%	65%
	2억원~4억원		70%	
	4억원 초과	40%	60%	55%
법인사업자		30%	50%	

— (적용기한*) ’25.12.31.

* 우대 공제한도에 적용

개 정

☐ 우대 공제한도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27.12.31.

<개정이유>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 완화

01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

02

2025
세무별 핵심 개정세법

03

2025
개정세법 종전·개정사항
비교

06

상속세 및 증여세법

01

영리법인에 유증시 상속세 납부의무자 확대

(상증법 §3의2)

종 전	개 정
☐ 영리법인이 수유자 또는 특별연고자인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자 ①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 <추 가>	☐ 납부의무자 추가 ① (좌 동) ② ①의 배우자

<개정이유> 상속세 납부의무 대상 합리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02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개설 증권시장 주식거래 증여세 과세 합리화

(상증법 §44, 상증령 §26, §33)

종 전	개 정
□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에 대한 증여추정* 적용 제외 대상 ※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재산 양도시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 경매, 파산선고, 공매, 대가 수수가 명백한 경우, 거래소 주식거래* 등 ※ 당일 종가거래를 제외한 시간외 대량매매는 증여추정 적용 <추 가> □ 특수관계인 간 고저가 양수도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제외 대상 ○ 전환사채등, 거래소 주식거래* ※ 당일 종가거래를 제외한 시간외 대량매매는 과세대상 포함 <추 가>	□ 제외 대상 추가 ○ (좌 등) ○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개설 증권시장 주식거래* ※ 당일 종가거래를 제외한 대량·바스켓매매는 증여추정 적용 □ 제외 대상 추가 ○ (좌 등) ○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개설 증권시장 주식거래* ※ 당일 종가거래를 제외한 대량·바스켓매매는 과세대상 포함

<개정이유> 주식시장 거래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01

2026
발라지는
세금제도

02

2025
세목별
핵심
개정세법

03

2025
개정세법
종전-개정
상황
비교

03

특정법인의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범위 명확화

(상증법 §45의5)

종 전	개 정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지배주주등(지배주주 +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 ○ (증여자)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 지배주주 : 지분율이 가장 높은 개인 ○ (증여자의 거래대상) 특정법인 ○ (수증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 ※ 자기증여분 과세 제외	☐ 증여자 적용범위 명확화 ○ (증여자) 특정법인 지배주주 본인 포함 ○ (좌 동)

<개정이유> 증여의제 적용범위 명확화

04

공익법인 사후관리 대상 출연재산 범위 확대

(상증법 §48)

종 전	개 정
☐ 공익법인 사후관리 대상 ○ 출연재산 및 그 운용소득·매각대금 <추 가>	☐ 사후관리 대상 출연재산 범위 확대 ○ (좌 동) - 출연재산에 출연재산으로 취득한 재산, 매각대금·운용 소득으로 취득한 재산, 이를 반복하여 취득한 재산 일체를 포함

<개정이유> 공익법인 사후관리 규정 보완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07

종합부동산세법

01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규정 정비

(종부법 §7, §12 등)

종 전	개 정
☐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 (원칙) 신탁재산의 위탁자 ○ (예외) 다음의 조합인 경우 그 조합이 위탁자* * 조합원 금전 매입주택에 한정 —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 조합, 직장주택조합 <추 가>	☐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조합 추가 ○ (좌 동) —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

<개정이유> 과세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02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물적납세의무 적용범위 확대

(종부법 §7의2, §12의2)

종 전	개 정
☐ 위탁자 체납에 대한 수탁자의 종합부동산세 물적납세의무 적용범위 ○ 신탁재산 <추 가>	☐ 적용범위 확대 ○ (좌 동) ○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등으로 얻은 소득

<개정이유> 과세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01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

02

2025
세무별
핵심
개정세법

03

2025
개정세법
종전-개정
상황
비교

03

합산배제 요건 미충족시 종부세가 추징되는 대상 주택 추가

(종부법 §17⑤, 종부령 §10)

종 전	개 정
☐ 종부세 합산배제 후 합산배제 요건 미충족시 종부세가 추징되는 주택 ☐ 임대주택, 어린이집용 주택 <추 가>	☐ 추징대상 주택 추가 ☐ (좌 동) ☐ 주택건설사업 목적의 멸실 예정주택으로서 3년* 내 멸실되지 못한 주택 * 합산배제 적용기간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04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중과 배제 기간 연장

(종부령 §4의3)

종 전	개 정
☐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 배제 및 주택수 제외 ☐ (대상주택)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 수도권 밖의 지역 소재 - 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원 이하 - '24.1.10.~'25.12.31. 기간 중 취득	☐ 적용기한 연장 - '25.12.31. → '26.12.31.

<개정이유>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08

조세특례제한법

01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기준금액 상향
(조특법 §6)

종 전	개 정
☐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 (기준금액) 연간 수입금액 8천만원 이하 ○ (감면율*) 5년간 소득세·법인세 50~100% 감면 ※ 일반 창업중소기업 5년간 0~50%	☐ 기준금액 상향 ○ 8천만원 → 1억 4백만원 ○ (좌 동)

<개정이유> 소규모 창업중소기업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01

2026
발라지는
세금제도

02

2025
세목별
핵심
개정세법

03

2025
개정세법
종전 개정사항
비교

02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을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조특법 §8의3)

종 전	개 정
□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공제대상 및 공제율)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금* : 10% * 신보·기보 출연금, 대·중소·농어업 협력재단 출연금, 중소기업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등 － 협력중소기업에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 장부가액의 3% － 수탁중소기업에 연구시설 등 설치 : 투자금액의 1/3/7%(대/중견/중소기업) － 대학 등에 중고자산 무상기증 : 해당 자산 시가의 10% <추 가> ○ (적용기한) '25.12.31.	□ 공제대상 기금에 무역보험기금 추가 － (좌 동) －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 (중소기업 보증·대출지원) 10% (중견기업 보증·대출지원) 5% ○ '28.12.31.

<개정이유> 대·중소기업 및 수출기업 상생협력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

03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한도 확대

(조특법 §12의2③)

종 전	개 정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 (대상)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 ○ (감면율) 3년 100% + 2년 50% ○ (감면한도)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 × 1,500만원(청년·서비스업 2,000만원) ○ (적용기한) '25.12.31.	☐ 감면 확대 ○ (좌 동) ○ (좌 동) ○ (감면한도 확대)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 × 1,500만원(청년·서비스업·연구개발우수인력 2,000만원) ○ '28.12.31.

<개정이유>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의 경쟁력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분부터 적용

01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

02

2025 세목별 핵심 개정세법

03

2025 개정세법 종전 개정사항 비교

04

벤처투자회사 및 내국법인의 벤처투자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조특법 §13, §13의2)

종 전	개 정
☐ 벤처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 ○ (내용) 창업·벤처기업 주식 등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 (대상) ① 직·간접 출자분 ②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출자분 <추 가> ○ (적용기한) '25.12.31. ☐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 출자 세액공제 ○ (내용) 창업·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금액에 대해 5% 세액공제 ○ (대상) ① 직·간접 출자분 ②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출자분 <추 가> ○ (적용기한) '25.12.31.	☐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좌 동) ③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 회사*(SPC)를 통한 간접출자분 * 벤처투자조합이 100% 출자하여 설립 ○ '28.12.31. ☐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등 ○ (좌 동) ④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 회사(SPC)를 통한 간접출자분 ○ '28.12.31.

<개정이유> 벤처투자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SPC)에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05

벤처투자 비과세 적용대상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3, 조특령 §12)

종 전

□ 벤처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

○ (적용대상)

① 직접출자

출자자	피출자자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창업기업,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코넥스 상장 중소기업

② 간접출자*

* 벤처투자조합 등을 통한 출자

출자자	피출자자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기금운용법인 (공무원연금공단, 신보, 기보, 중기중앙회 등)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벤처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코넥스 상장 중소기업

③ 민간모펀드를 통한 출자

출자자	피출자자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민간모펀드의 공동운용사인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출자방식) 설립 시 자본금 납입, 7년 내
유상증자·잉여금 자본전입·채무 자본전환

○ (적용기한) '25.12.31.

개 정

□ 적용대상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③ 민간모펀드의 공동운용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출자자	피출자자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좌 동)

○ '28.12.31.

<개정이유> 벤처투자주체 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01

2026
달라지는 세법제도

02

2025
세목별 핵심 개정세법

03

2025
개정세법 종전·개정사항 비교

06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벤처투자 세제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의2)

종 전	개 정
☐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예의 출자 세액공제 ○ (세액공제율) ① 직·간접* 출자 : 주식 등 취득가액의 5% ※ 벤처투자조합 등을 통한 출자 ②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출자 : 출자금액*의 5% + 주식 등 취득가액 증가분의 3% ※ Max(벤처기업 주식 등 취득가액, 민간 벤처모펀드 투자액의 60%) ○ (적용기한) '25.12.31.	☐ 세액공제율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 (세액공제율) ① (좌 동) ② 출자금액의 5% + 증가분의 5% ○ '28.12.31.

<개정이유> 벤처모펀드를 통한 벤처투자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내국법인이 민간 벤처모펀드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07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 배당소득 비과세 신설
(조특법 §14)

종 전	개 정
<신 설>	□ 벤처투자조합이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설 ○ (특례 대상 소득) － SPC가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 또는 적격 출자지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 벤처투자조합 출자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과 동일 － SPC가 취득한 내국법인 채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 (내용) 특례 대상 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개인의 SPC 배당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 ○ (적용기한) '28.12.31.

<개정이유> 벤처투자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SPC)에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01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

02

2025
세
목
별
핵
심
개
정
세
법

03

2025
개
정
세
법
중
전
개
정
사
항
비
교

08

국제결제은행 국내 투자소득 비과세 신설

(조특법 §21④·⑤·⑥)

종 전	개 정
□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 비과세 적용 ○ 국가·지자체·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 채권의 이자·수수료 등 ○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한 국가·지자체·내국법인 발행 외화증권 등 양도소득 <추 가>	□ 비과세 소득에 국제결제은행(BIS)의 국내 투자소득 추가 ○ (좌 동) ○ 국제결제은행(BIS)의 이자·배당·유가증권 양도소득 - (투자방법) ① 또는 ② ① (직접투자) 국내 보관 기관에 직접 계좌를 개설하여 투자 ② (간접투자) 적격외국 금융회사*를 통해 투자 * 한국예탁결제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외국법인으로서 국세청장이 승인한 법인 - (신청절차) 관할 세무서장에 비과세 적용 신청

<개정이유> 국제금융기구의 원화자산 투자 활성화

<적용시기> '2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09

영상콘텐츠 세제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25의6)

종 전	개 정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 드라마·애니메이션·다큐멘터리 등 TV프로그램, 영화, OTT콘텐츠 ○ 공제율 - (기본공제율) 10%(중소 : 15%, 대 : 5%) - (추가공제율*) 10%(중소 : 15%) * 국내 제작비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콘텐츠 등에 적용 ○ (적용기한) '25.12.31.	☐ 세액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공제율 조정 - (기본공제율) 10%(중소 : 15%) - (좌 동) ○ '28.12.31.

<개정이유> 영상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발생하는 비용 분부터 적용

10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25의7)

종 전	개 정
☐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 (적용대상) 중소·중견기업 ○ (공제대상)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액 중 영상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비용 - (영상콘텐츠) 영화, TV프로그램, OTT 콘텐츠 - (제외비용) 기업업무추진비, 광고·홍보비 등 ○ (공제율) 3% ○ (적용기한) '25.12.31.	☐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대기업 포함 ○ (좌 동) ○ '28.12.31.

<개정이유>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01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

02

2025 세목별 핵심 개정세법

03

2025 개정세법 종전 개정사항 비교

11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조특법 §25의8, 조특령 §22의12, 조칙 §13의11 신설)

종 전	개 정
<신 설>	□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 (대상콘텐츠) 「만화진흥법」상 웹툰* 및 디지털만화** * 정보통신망에 유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에서 제작된 만화 ** 종이 등 유형물에 그려진 만화를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처리하고 디스크 등의 디지털매체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만화 ○ (대상자) 「만화진흥법」상 만화사업자*로 웹툰 및 디지털만화의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는 자 * 만화를 기획·개발·제작·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그와 관련된 서비스제공자 ○ (공제비용) 기획·제작 인건비, 원작소설 저작권 사용료, 웹툰 제작 프로그램 사용비 등 웹툰 및 디지털만화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 (제외비용) 정부 지원액, 홍보비 등 간접비용 등 ○ (공제시기)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 (공제율) 10%(중소 : 15%) ○ (적용기한) '28.12.31.

<개정이유> 웹툰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발생하는 비용 분부터 적용

12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조특법 §28의5, 조특령 §25의5 신설)

종 전	개 정
<신 설>	☐ 중소기업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대상자산) 중소기업이 취득한 스마트공장*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 * 제조데이터에 기반하여 제품의 제조과정을 제어하고 개선하여 나가는 지능형 공장 등 ○ (내용)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 * 일반적인 경우 기준내용연수의 25%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 (적용기한) '28.12.31.

<개정이유> 중소기업 스마트혁신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취득하는 설비투자 분부터 적용

01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

02

2025
세목별
핵심
개정세법

03

2025
개정세법
종전 개정사항
비교

13

통합고용세액공제액 구조 개편 및 사후관리 합리화

(조특법 §29의8, 조특령 §26의8)

종 전

□ 통합고용세액공제

- (공제대상) 상시근로자* 증가분
 - *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 (공제액)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 * 전체 고용 증가분에 대해 공제 적용

구분	1인당 공제액 (단위 : 만원)			
	중소(3년)		중견 (3년)	대 (2년)
	수도권	지방		
우대*	1,450	1,550	800	400
기본	850	950	450	—

* 청년(15~34세),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

- (사후관리) 공제 후 2~3년간 고용유지 의무
 - 감소시 공제액 상당분 추징
 -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전액 공제 배제

○ (적용기한) '25.12.31.

개 정

□ 공제액 개편, 사후관리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

- 상시근로자* 증가분
 - * 실제 근로기간 1년 이상
-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 적용

구분		1인당 공제액 (단위 : 만원)			
		중소(3년)		중견 (3년)	대 (2년)
		수도권	지방		
우대*	1년차	700	1,000	500	300
	2년차	1,600	1,900	900	500
	3년차	1,700	2,000	900	—
기본	1년차	400	700	300	—
	2년차	900	1,200	500	
	3년차	1,000	1,300	500	

* 청년(15~34세),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

- 고용 유지시 더 높은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사후관리 전환
 - (삭 제)
 - 고용 증가분 중 감소분에 한정하여 공제 배제

○ '28.12.31.

<개정이유> 장기고용 유인 강화 및 납세 협력 비용 경감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4

중견·대기업 최소 고용 증가 인원수 신설

(조특법 §29의8, 조특령 §26의8)

종 전	개 정
<신 설>	☐ 중견·대기업 최소 증가 인원수 설정 ○ (중견) 5명, (대기업) 10명 ○ 최소 증가 인원수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 적용

<개정이유> 중견·대기업의 고용 증대 유인 강화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5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을 외국법인에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38의4, 조특령 §35의5)

종 전	개 정
<신 설>	☐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등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내용) ①내국법인이 ②외국자회사 주식등을 ③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을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① (출자법인)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한 내국법인 ② (출자자산) 출자법인이 2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③ (피출자 외국법인) 출자법인이 80% 이상 지분 보유 ※ 피출자 외국법인은 외국자회사가 영위하던 사업을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계속 필요 ○ (사후관리) 다음 사유 발생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던 양도차익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i) 출자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등을 처분* * (예외) 출자법인의 합병으로 합병법인이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등 (ii) 피출자 외국법인이 현물출자받은 주식등을 처분 (iii) 내국법인, 피출자 외국법인 또는 외국자회사가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 ○ (적용기한) '28.12.31.

<개정이유> 해외사업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01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

02

2025
세무별
핵심
개정세법

03

2025
개정세법
종전+개정
상황
비교

16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조특법 §58)

종 전	개 정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특례 ☐ (기부대상) 기부자의 거주자 외 지방자치단체 ☐ (세액공제율) - (10만원 이하) 110분의 100 - (10만원 초과) 15% • (예외*) 특별재난지역에 기부시 10만원 초과분 30% ※ 선포일로부터 3개월내 기부 한정 ☐ (기부·공제한도) 2천만원	☐ 세액공제율 상향 ☐ (좌 동) -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40% (20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 15% • (예외*) 특별재난지역에 기부시 20만원 초과분 30% ※ 선포일로부터 3개월내 기부 한정 ☐ (좌 동)

<개정이유> 지역균형발전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17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

(조특법 §63·§63의2, 조특령 §60·§60의2)

종 전

- 공장·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기업의 소득·법인세 감면
- (요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
 - * 중소기업은 수도권 인구감소지역도 가능
 - (대상지역 및 감면기간)

	낙후지역 ¹⁾	그 외 지역
수도권 ²⁾	5년 100% + 2년 50%	감면 없음
수도권 연접지역 ³⁾	5년 100% + 2년 50%	5년 100% + 2년 50%
지방광역시	7년 100% + 3년 50%	5년 100% + 2년 50%
중규모도시 ⁴⁾	7년 100% + 3년 50%	5년 100% + 2년 50%
그 외	10년 100% + 2년 50%	7년 100% + 3년 50%

- 1) 인구감소, 성장축진, 고용·산업위기지역
- 2) 중소기업이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공장 이전하는 경우만 적용
- 3) 당진·아산·원주·음성·진천·천안·춘천·충주·홍천(내면 제외)·횡성
- 4) 구미·김해·전주·제주·진주·창원·청주·포항

<신 설>

<신 설>

- (적용기한) '25.12.31.

개 정

- 적용대상·감면기간 확대, 한도 신설 및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대상지역 및 감면기간 확대

	낙후지역	그 외 지역
수도권	5년 100% + 3년 50%	감면 없음
수도권 연접지역	5년 100% + 3년 50%	5년 100% + 3년 50%
지방광역시	7년 100% + 4년 50%	5년 100% + 3년 50%
중규모도시	10년 100% + 5년 50%	5년 100% + 3년 50%
그 외	10년 100% + 5년 50%	7년 100% + 4년 50%

- (감면한도) 지방투자누계액 × 70% + 지방근무 상시근로자 수 × 1,500만원(청년·서비스업 2,000만원)
- (사후관리) 감면받은 후 2년 내 상시근로자 수 감소시 추징*
 - * 1명당 1,500만원(청년·서비스업 2,000만원)
- '28.12.31.

<개정이유> 지역균형발전 지원 및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6.1.1. 이후 공장·본사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5.12.31. 이전에 기존 공장·본사를 철거·폐쇄하는 등 지방이전에 착수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01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

02

2025 세무별 핵심 개정세법

03

2025 개정세법 종전·개정사항 비교

18

영농조합법인 등에 농지 출자시 세제지원방식 전환

(조특법 §66, §68)

종 전	개 정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농지·초지 현물출자 과세특례 ○ (대상) 4년 이상 자경농지 소재지* 거주 농민 ※ 농지 소재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 ○ (내용) 현물출자 농지·초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 (사후관리) 출자 후 3년 내 출자지분 처분 시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액 납부	□ 특례방식을 이월과세로 전환 ○ (좌 동) ○ 현물출자 농지·초지에 대해 이월과세* 적용 ※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양수법인이 해당 농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 ○ 출자 후 3년 내 출자지분 50% 이상 처분 시 이월과세액 및 이자상당액 납부

<개정이유> 농업 경쟁력 강화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19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특례 적용 범위 확대

(조특법 §71의2)

종 전	개 정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특례* ※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시 기존 보유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주택소재지) 인구감소지역 - 단, 수도권 및 광역시 구지역은 제외하되, 수도권 내 접경지역은 포함 ○ (적용기간) '24.1.4.~'26.12.31. 취득분	☐ 지원대상 확대 ○ 비수도권 인구감소 관심지역 추가 - (좌 동) ○ (좌 동)

<개정이유> 지방균형발전 지원 및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

<적용시기> '25.11.28. 이후 취득하는 주택분부터 적용

20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합리화

(조특법 §72)

종 전	개 정
☐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 (대상)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 (적용세율) - 과표 20억원 이하 : 9% - 과표 20억원 초과분 : 12% ○ (세무조정) 9개 항목*에 한정 ※ 기부금, 기업업무추진비, 과다경비,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지급이자, 대손금,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 (적용기한) '25.12.31.	☐ 세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적용세율) - (좌 동) - 12% → 15% ○ (좌 동) ○ '28.12.31.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1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

02

2025
세목별 핵심 개정세법

03

2025
개정세법 종전·개정사항 비교

21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조특법 §85의6②)

종 전	개 정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 (대상) 장애인 표준사업장 ○ (감면율) 3년 100% + 2년 50% ○ (감면한도) 1억원 + 장애인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 ○ (적용기한) '25.12.31.	☐ 감면 확대 ○ (좌 동) ○ (감면율) 3년 100% + 2년 50% + 5년 30% ○ (좌 동) ○ '28.12.31.

<개정이유>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

<시행시기> '26.1.1. 이후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부터 적용

22

비과세 종합저축 과세특례 가입대상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88의2)

종 전	개 정
☐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 (가입대상*)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독립유공자(유·가족), 국가유공상이자 등 - 65세 이상 노인 ○ (납입한도) 5천만원 ○ (적용기한) '25.12.31.	☐ 가입대상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인 65세 이상 노인 ○ (좌 동) ○ '28.12.31.

<개정이유> 취약계층 지원 및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23

농·어·임업인 등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및 저율 분리과세 일부 도입

(조특법 §88의5, §89의3, 조특령 §82의5, §83의3)

종 전

-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 감면
- (대상자) 조합원·준조합원·회원 등
 - (대상소득) 예탁금·출자금의 이자·배당소득
 - (감면한도) 예탁금 3,000만원, 출자금 2,000만원
 - (과세특례) 소득발생 기간에 따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발생 기간	'25.12.31. 까지	'26.1.1. ~ '26.12.31.	'27.1.1. 부터
감면 내용	비과세	5% 분리과세	9% 분리과세

개 정

- 저율 분리과세 일부 도입

○ (좌 등)

- (과세특례) 가입일에 따라 비과세 또는 저율 분리과세

① 농·어·임업인 조합원,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가입자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가입일 출자일	'28.12.31. 까지	'29.1.1. ~ '29.12.31.	'30.1.1. 부터
감면 내용	비과세	5% 분리과세	9% 분리과세

② 총급여 7,000만원* 초과 가입자

(농·어·임업인 조합원 제외)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가입일 출자일	'25.12.31. 까지	'26.1.1. ~ '26.12.31.	'27.1.1. 부터
감면 내용	비과세	5% 분리과세	9% 분리과세

<개정이유> 농·어·임업인 지원 및 과세형태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가입·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01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

02

2025
세무별 핵심 개정세법

03

2025
개정세법
종전 개정사항
비교

24

ISA 편입 가능 상품 명확화

(조특법 §91의18③)

종 전	개 정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편입 가능 상품 ○ 예금·적금·예탁금 ○ 파생결합증권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 집합투자증권 <단서 신설>	☐ 역외펀드 편입 불가 명확화 ○ (좌 동) —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역외펀드) 제외

<개정이유> ISA 지원대상 명확화

25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미추징 사유 추가

(조특법 §91의22)

종 전	개 정
☐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추징 ○ (추징)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 해지시 비과세 적용받은 상당세액 추징 — (미추징 사유) • 사망, 해외이주, 혼인·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해지 시 <추 가>	☐ 감면세액 미추징 사유 추가 ○ (좌 동) •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중도해지 시

<개정이유>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보호

26

소득요건 기준연도 특례 대상에 조합 등 예탁금·출자금 추가

(조특법 §91의24)

종 전	개 정
☐ 저축지원 과세특례 가입시 소득요건 기준연도 특례 ○ (대상 상품) - 서민형 ISA - 청년도약계좌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추 가> ○ (기준 연도) - (원칙) 직전연도 - (예외*) 1~7월 기간 중 가입 시 전전연도 소득도 허용 * 단, 직전연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는 직전연도 소득을 적용	☐ 특례 적용 대상 추가 ○ (좌 동) - 조합 등 예탁금·출자금 ○ (좌 동)

<개정이유> 조합 등 예탁금·출자금 가입 시 편의 제고

01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

02

2025
세무별
핵심
개정세법

03

2025
개정세법
종전+개정사항
비교

27

청년미래적금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91의25)

종 전	개 정
<신 설>	☐ 청년미래적금 과세특례 신설 ○ (가입요건) ①만 19~34세 ②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등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세제지원)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비과세 ○ (납입한도) 연 600만원 ○ (의무가입기간) 3년 * 의무가입기간 경과 전 인출·해지 시 감면세액 추징 ○ (적용기한) '28.12.31.까지 가입분

<개정이유> 청년 자산형성 지원

28

무주택 주말부부에 대해 각각 월세 세액공제 허용

(조특법 §95의2)

종 전	개 정
☐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 ①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근로자 ※ 거주자와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간주 － 세대주가 주택 관련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 월세세액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주택임차자금 차입원리금 공제 등 <추 가> ☐ 월세 세액공제 한도 ○ 연간 월세액 1,000만원	☐ 적용대상 추가 ① (좌 등) ②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주의 배우자”로서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근로자 (i) 세대주와 배우자 주소지*가 각기 다른 시군구에 있을 것 ※ 임대차계약증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지 (ii) 배우자와 동거하는 직계 존비속등*이 무주택자일 것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 한도 계산시 세대주·배우자 월세액 합산 ○ ① + ② 합산 연간 월세액 1,000만원

<개정이유>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01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

02

2025
세무별
핵심
개정세법

03

2025
개정세법
종전·개정사항
비교

29

프로젝트 리츠에 대한 현물출자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97의9, 조특령 §97의10 신설)

종 전	개 정
<신 설>	□ 내국인·내국법인이 리츠에 토지·건물 현물출자시 양도세 납부이연 및 법인세 과세 이연 ○ (대상)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 ※ 부동산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된 회사로서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운용하는 회사 ○ (내용)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처분시까지 양도세 납부이연 또는 법인세 과세 이연 ○ (현물출자 기한)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 이내 ○ (사후관리) 다음의 경우 과세이연 종료 (i)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누적처분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 이연받은 세액 × 주식처분비율 (ii)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누적처분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및 리츠가 해산한 경우 : 이연받은 세액 전액 (iii) 리츠의 영업인가 취소 등 : 이연받은 세액 전액 및 이자상당액 ○ (적용기한) '28.12.31.

<개정이유> 부동산 개발사업 선진화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30

농어촌주택등 취득시 양도세 특례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99의4, 조특령 §99의4)

종 전	개 정
□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일반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 농어촌주택등(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 보유주택(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농어촌주택등) ①기회발전특구, ②수도권·조정대상지역 등이 아닌 읍·면 또는 ③인구 20만 이하 시지역 내 동(洞) 소재 주택 － 단, 일반주택 소재지와 같거나 연결한 읍·면 또는 같거나 연결한 동에 있지 않을 것 ○ (적용기한) '25.12.31.	□ 요건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일반주택 소재지와 같거나 연결한 읍·면·동이 아닐 것 ○ '28.12.31.

<개정이유> 지역균형발전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01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

02

2025
세무별
핵심
개정세법

03

2025
개정세법
종전 개정사항
비교

31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합리화

(조특법 §99의9)

종 전	개 정
☐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 (업종) 제조업, 통신판매업, 음식점업 등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업종 <신 설> ○ (감면율) 5년 100%, 2년 50%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 (감면한도) 중소기업 외의 기업에 대해 다음을 적용 - 투자누계액의 50% + 상시근로자 수 × 1,500만원(청년·서비스업 2,000만원)	☐ 감면요건 신설 및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한도 적용 ○ (좌 동) ○ (요건) 5억원 이상 투자 + 10명 이상 고용 ○ (좌 동) ○ 중소기업에도 감면한도 적용 - (좌 동)

<개정이유>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분부터 적용

32

영세 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요건 완화

(조특법 §99의10, 조특령 §99의9)

종 전	개 정
☐ 영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 (대상 체납액) 폐업연도의 7.25. 기준 징수 곤란 체납액* * 기준일 당시 무재산 등으로 인해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 ○ (징수특례 내용)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분납 허용 ○ (적용대상) 재기영세사업자 ① 폐업 직전 3년 평균 수입금액 15억원 미만 등 ② '24.12.31.이전 폐업 및 '27.12.31.까지 재기 - 재기 : (i) 또는 (ii) 충족 (i) 1개월 이상 사업 (ii) 3개월 이상 근무 <추 가> ③ 체납액 5천만원 이하 ○ (신청기한) '28.12.31.	☐ 적용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적용대상 확대 ① (좌 동) ② '25.12.31.이전 폐업 및 '28.12.31.까지 재기 - 재기요건 추가 (i)·(ii) (좌 동) (iii) 3개월 이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서 노무를 제공한 자 (근로자 제외) ③ 5천만원 → 8천만원 ○ '29.12.31.

<개정이유> 영세 개인사업자 재기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특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01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

02

2025 세무별 핵심 개정세법

03

2025 개정세법 종전 개정사항 비교

33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특례 신설

(조특법 §99의15)

종 전	개 정
<신 설>	□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 －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경우로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것 － 소멸대상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일 것 * 실태조사 결과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5.1.1. 이전에 발생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체납액 － 폐업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 금액이 일정 금액(시행령에서 규정*) 미만일 것 * 업종별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총수입금액 기준 －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법 처벌법」에 따른 처벌·재판 진행 사실이 없을 것 －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법 처벌법」에 따른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을 것 － 종전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신청 기간) 2026. 1. 1.~2028. 12. 31. ○ (결정) 국세채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 결정·통지 ○ (취소) 실태조사일 당시 징수 가능한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경우 납부의무 소멸 취소

<개정이유> 생계형 체납자 경제활동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시행

34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개편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0의32, 조특령 §100의32, 조특칙 §45의10)

종 전

□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 (과세방식) 미환류소득* × 20%

※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 - 환류대상

○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국제환급금 이자 등
가산 - 법인세액 등 차감

- (투자포함형) 기업소득 × 70%*

※ 60~80%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

- (투자제외형) 기업소득 × 15%*

※ 10~20%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

○ (환류대상)

항목	가중치
투자	1
임금증가(① + ② + ③)	
① 상시근로자 임금증가분	1~2
② 청년정규직 임금증가분	1
③ 정규직전환 임금증가분	1
상생협력 지출액	3

○ (적용기한) '25.12.31.

개 정

□ 제도 개편 및 적용기한 연장

○ (좌 등)

○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 비율 상향

- 65~85%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

- 20~40%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

○ 환류대상에 배당 추가

항목	가중치
투자	1
임금증가(① + ② + ③)	
① 상시근로자 임금증가분	1~2
② 청년정규직 임금증가분	1
③ 정규직전환 임금증가분	1
상생협력 지출액	3
배당*	1

※ 해당 사업연도 중 지급한 금전배당
(결산배당 및 중간·분기배당)

○ '28.12.31.

<개정이유> 기업의 배당 환류 촉진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01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

02

2025
세무별 핵심 개정세법

03

2025
개정세법 종전·개정사항 비교

35

대학의 수익용 자산 대체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조특법 §104의16)

종 전	개 정
□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시 과세이연 ○ (적용대상) 토지, 건축물(이하 ‘토지등’) ○ (과세이연 방식) － (토지등)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추 가> <신 설> ○ (과세이연금액) 양도차익 중 대체취득분 (= ① × ②*) ※ ①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이월결손금 ② 신규자산 취득가액 / 기존자산 양도가액 ○ (사후관리) 다음 사유 발생시 과세이연금액 익금산입 － 대체취득을 하지 않은 경우 <추 가>	□ 적용대상 확대 등 ○ 유가증권* 추가 ※ 국내 상장법인 주식, 국·공채 ○ 유가증권 과세이연방식 추가 － (좌 동) － (유가증권) 대체취득 유가증권 처분시 익금산입 ○ (과세이연 요건) 동종 수익용 기본재산 대 체취득*시에 한정 ※ 토지등 매각 → 토지등 대체취득 유가증권 매각 → 유가증권 대체취득 ○ (좌 동) ○ 사유 추가 － (좌 동) － 사립학교의 경영자 등이 「사립학교법」 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교지·교사 등 교육용도 학교재산의 매 도·담보제공 금지 위반, 수익사업 수익 의 학교경영 외 목적사용 등

<개정이유> 대학 재정건전성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6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추정 예외사유 신설

(조특법 §104의19)

종 전	개 정
☐ 종부세 합산배제*된 주택건설사업자 보유 토지에 대한 사후관리 ※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하여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 ○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종부세 추정 <단서 신설>	☐ 사후관리 예외 신설 ○ (좌 동) - 천재지변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추정 제외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및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추정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37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부분복귀 후 추정사유에 국외사업장을 축소 완료하지 않은 경우 추가(조특법 §104의24④, 조특령 §104의21③)

종 전	개 정
☐ 감면받은 소득·법인세 추정사유 및 추정금액 ○ 복귀일로부터 3년 내에 폐업·해산한 경우 : 폐업·해산일로부터 소급해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 국외사업장을 양도·폐쇄하지 않은 경우 : 감면세액 전액 ○ 국외사업장을 축소해 감면받은 후 다시 확대하는 경우 : 국외사업장 신·증설일로부터 소급해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 추정사유에 국외사업장을 축소완료하지 않은 경우 추가 ○ (좌 동) ○ 국외사업장을 양도·폐쇄 또는 축소완료하지 않은 경우 : 감면세액 전액 ○ (좌 동)

<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6.1.1. 이후 국내사업장을 신·증설하는 분부터 적용

01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

02

2025
세무별 핵심 개정세법

03

2025
개정세법
종전 개정사항
비교

38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조특법 §104의27 신설)

종 전

개 정

<신 설>

□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 (대상) 고배당 상장법인* 주주(거주자)

* 기준연도(2024년 사업연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① 또는 ② 총족 법인

① 배당성향 40% 이상

② 배당성향 25% 이상 및 전년 대비 배당 10% 이상 증가

－ (제외) 공모·사모펀드, 리츠, 투자목적회사(SPC) 등

○ (과세특례)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분리과세

－ (대상) 현금배당액(중간·분기·결산배당 포함)

－ (적용세율) 4단계 누진세율

과세표준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50억원 초과
적용세율	14%	20%	25%	30%

○ (적용기간) '28.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배당분까지

<개정이유> 주식시장 활성화 촉진을 통한 경제 선순환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지급되는 배당분부터 적용

39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개편

(조특법 §104의30, 조특령 §104의27)

종 전	개 정
□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국적선사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는 등 선주-화주 간 상생협력 노력이 우수하다고 해수부장관이 인증한 기업 ○ (대상) 국제물류주선업자* ※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자 ○ (요건) ① 전체 해상운송비용 중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운송비용이 40% 이상 ② 해당 비율이 전년대비 증가 ○ (공제율)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운송비용의 1% + 전년대비 증가액의 3% <신 설> ○ (적용기한) '25.12.31.	□ 세액공제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기본공제) － (요건) 운송비용 → 물동량 <삭 제> － (공제율)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운송비용의 0.5% ○ (추가공제) － (요건) 전체 원양 해상물동량 중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물동량이 25% 이상 － (공제율) 원양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원양 운송비용의 1% ○ '28.12.31.

<개정이유> 선주·화주 간 상생협력 지원 및 원양해운 경쟁력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1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

02

2025
세목별
핵심
개정세법

03

2025
개정세법
종전-개정
비교

40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 (조특법 §104의36)

종 전	개 정
<신 설>	☐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 ○ (대상) 한국산업은행 ○ (내용)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금 손금산입 ○ (적용기한) '28.12.31.

<개정이유>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41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및 추징사유 합리화

(조특법 §105①·②)

종 전	개 정
□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 (영세율) 농·어민이 적용대상 기자재를 국내에서 구입 ○ (적용대상) - 농민 또는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축산·임업용 기자재 -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 ○ (추징)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액 + 가산세(10%) - 농민*이 아닌 자가 축산업용 기자재 등을 부정하게 공급받는 경우 * 축산업 주업법인, 축산계열화 사업자, 비영리 가축검정기관 등 포함 ○ (적용기한) '25.12.31.	□ 추징사유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농민*·임업인 또는 어민이 아닌 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등을 공급받는 경우 * 축산업 주업법인, 축산계열화 사업자, 비영리 가축검정기관 등 포함 ○ '28.12.31.

<개정이유>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

<적용시기> '26.1.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01

2026
달라지는 세법제도

02

2025
세목별 핵심 개정세법

03

2025
개정세법
종전 개정사항
비교

42

중고차 등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한도 신설
(조특법 §108)

종 전	개 정
□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제매입세액공제 ○ (요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제조·가공·공급하는 경우 ○ (공제대상) 재활용폐자원, 중고차 취득가액 ○ (공제율) 폐자원 : 3/103 중고차 : 10/110 ○ (공제한도) － 폐자원 : 매출액의 80% - 세금계산서 매입액 <신 설> ○ (적용기한) '25.12.31.	□ 중고자동차에 대한 공제한도 신설 및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중고차 : 매출액 - 세금계산서 매입액 ※ 2개 과세기간(1년)간 이월공제 허용 ○ '28.12.31.

<개정이유> 중고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제도의 합리화

<적용시기> '26.7.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43

저도수 혼성주류에 대한 한시적 주세 감면 신설

(조특법 §115의2)

종 전	개 정
<신 설>	☐ 저도수 혼성주류에 대한 한시적 주세 감면 ○ (대상) ①~③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류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주류 ① 증류주류 및 기타주류(주세법 별표 제4호 라목·마목) ② 알코올 도수분 일정 도수 이하 ③ '28.12.31까지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 ○ (감면) 주세율 30% 경감(일정 출고량 한도) ※ 적용대상 주류의 구체적 범위, 출고량 한도, 알코올 도수 요건은 시행령 규정

<적용시기> '26.4.1.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4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벤처투자조합 투자목적회사(SPC) 추가

(조특법 §117①·②)

종 전	개 정
☐ 창업·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증권 거래세 면제 ○ (대상)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등 <추 가> ○ (적용기한) '25.12.31.	☐ 대상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 회사(SPC) ○ '28.12.31.

<개정이유> 벤처투자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취득한 주권 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01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

02

2025
세무별
핵심
개정세법

03

2025
개정세법
종전·개정
상황
비교

45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시장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17①·②)

종 전	개 정
☐ 주식·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주식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 (대상) 금융투자업자 ○ (적용시장) － 한국거래소 개설 증권시장 <추 가> ○ (적용기한) '25.12.31.	☐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시장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개설 증권시장* * 「자본시장법」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 ○ '28.12.31.

<개정이유> 주식시장 거래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6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조특법 §121의26)

종 전	개 정
□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 과세특례 ○ (대상)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내국법인 ※ 자산의 양도를 통해 상환할 금액 총액·내용, 금융채권자채무 상환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재편계획 ○ (내용) 자산양도차익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단서 신설〉 ○ (적용기한) '26.12.31.	□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기업 과세이연 확대 ※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지역(산업부장관이 지정) ○ (좌 동) —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기업 :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 (좌 동)

<개정이유>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의 기업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01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

02

2025
세무별 핵심 개정세법

03

2025
개정세법
종전 개정사항
비교

47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조특법 §126의2)

종 전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 (공제율)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구 분	공제율
① 신용카드	15%
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③ 전통시장·대중교통	40%
④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 관람료·체육시설이용료	30%

* ④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지만 적용

○ (공제한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7천만원 초과자
공제한도			
기본공제 한도		300	250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300	200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

○ (적용기한) '25.12.31.

개 정

□ 자녀 수에 따라 공제한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자녀 1명당 기본공제 한도 50만원(최대 100만원) 상향

— 단,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자녀당 25만원(최대 50만원) 상향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7천만원 초과자
공제한도			
기본공제 한도		300	250
자녀 1명		350	275
자녀 2명 이상		400	300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300	200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

○ '28.12.31.

<개정이유> 자녀 양육부담 완화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48

지역사랑상품권 업무추진비 손금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36)

종 전	개 정
☐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인정 특례 ○ (추가 손금산입 한도) ① 문화비 지출분 :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의 20% ② 전통시장 지출분* :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의 10% ※ 일반유흥주점업 등 소비성서비스업종 지출액은 제외 ○ (적용기한) '25.12.31.	☐ 특례대상·한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① (좌 동) ② 전통시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지출분* :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의 20% ※ 일반유흥주점업 등 소비성서비스업종 지출액은 제외 ○ '28.12.31.

<개정이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01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

02

2025
세무별
핵심
개정세법

03

2025
개정세법
종전 개정사항
비교

49

조세감면제도 존치 의견 제출 시 의견서에 포함될 내용 구체화
(조특법 §142)

종 전	개 정
☐ 조세감면 효과분석 및 조세감면제도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의견서 제출 의무 ○ (작성자) 중앙행정기관의 장 ○ (작성대상 조세특례) ① 일몰기한 도래 ② 시행 후 2년 미도과 ③ 기존 조세특례 범위 확대 ○ (작성내용) 조세감면으로 인한 효과분석, 제도 존치 여부에 대한 의견 등 ○ (제출기한) 매년 4월 30일 <추 가>	☐ 조세감면제도 존치 의견서 제출시 포함 내용 구체화 ○ (좌 동) ○ 조세감면의 필요성, 정책목표의 예상 달성 시기, 세수감소에 따른 보완대책 등

<개정이유> 조세특례 사후관리 내실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50

조세지출결산서 작성 의무 신설
(조특법 §142의3)

종 전	개 정
<신 설>	☐ 조세지출결산서 작성 ○ (작성자) 기획재정부장관* * 1.2일부터는 재정경제부장관 **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관련 자료 제출 의무 ○ (작성내용*) 직전연도 조세지출 실적 분석 * 구체적인 작성방법·제출시기 등은 대통령령 위임

<개정이유> 조세지출 관리 내실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시행

51

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 신설 및 확대

(조특령 [별표 7의2])

종 전	개 정																
□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국가전략기술* 세부 기술 ※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 (중소 40~50%, 중견·대 30~40%) 적용 ○ 7개 분야* 71개 기술 ※ ①반도체 23개, ②이차전지 10개, ③백신 7개, ④디스플레이 8개, ⑤수소 10개, ⑥미래형운송·이동수단 5개, ⑦바이오의약품 8개 <추 가>	□ 세부기술 대상 확대 ○ 8개 분야* 78개 기술 ※ 인공지능 분야 추가 — 7개 신설, 2개 확대 • (신설) 7개 <table border="1"> <thead> <tr> <th>분야</th><th>세부기술</th></tr> </thead> <tbody> <tr> <td rowspan="4">인공 지능 (5개)</td><td>생성형 인공지능</td></tr> <tr> <td>에이전트 인공지능</td></tr> <tr> <td>학습 및 추론 고도화</td></tr> <tr> <td>저전력·고효율 인공지능 컴퓨팅</td></tr> <tr> <td rowspan="2">미래형 운송· 이동 (2개)</td><td>인공지능형 자율운항</td></tr> <tr> <td>탐승자 인지 및 인터페이스</td></tr> </tbody> </table> • (확대) 2개 <table border="1"> <thead> <tr> <th>분야</th><th>세부기술</th></tr> </thead> <tbody> <tr> <td rowspan="3">미래형 운송· 이동 (2개)</td><td>주행상황 인지 센서·소프트웨어 → 센서, 소프트웨어 단독도 적용</td></tr> <tr> <td>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td></tr> <tr> <td>→ 핵심부품 인정을 위해 범위 확대</td></tr> </tbody> </table>	분야	세부기술	인공 지능 (5개)	생성형 인공지능	에이전트 인공지능	학습 및 추론 고도화	저전력·고효율 인공지능 컴퓨팅	미래형 운송· 이동 (2개)	인공지능형 자율운항	탐승자 인지 및 인터페이스	분야	세부기술	미래형 운송· 이동 (2개)	주행상황 인지 센서·소프트웨어 → 센서, 소프트웨어 단독도 적용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 핵심부품 인정을 위해 범위 확대
분야	세부기술																
인공 지능 (5개)	생성형 인공지능																
	에이전트 인공지능																
	학습 및 추론 고도화																
	저전력·고효율 인공지능 컴퓨팅																
미래형 운송· 이동 (2개)	인공지능형 자율운항																
	탐승자 인지 및 인터페이스																
분야	세부기술																
미래형 운송· 이동 (2개)	주행상황 인지 센서·소프트웨어 → 센서, 소프트웨어 단독도 적용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 핵심부품 인정을 위해 범위 확대																

<개정이유> 첨단 전략산업 R&D 활성화

<적용시기> '25.7.1. 이후 발생하는 비용 또는 투자 분부터 적용, 다만, 인공지능 분야와 미래형 운송·이동수단 분야 중 인공지능형 자율운항과 관련된 세부기술의 경우에는 '25.1.1. 이후 발생하는 비용 분부터 적용

01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

02

2025
세무별 핵심 개정세법

03

2025
개정세법
종전·개정사항
비교

52

신성장·원천기술 세부기술 신설

(조특령 [별표 7])

종 전	개 정				
□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신성장·원천기술* 세부기술 ※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 (중소 30~40%, 중견·대 20~30%) 적용 ○ 14개 분야* 273개 기술 ※ ①미래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S/W ④콘텐츠, ⑤전자정보 디바이스, ⑥차세대 방송통신, ⑦바이오·헬스, ⑧에너지·환경, ⑨융복합소재, ⑩로봇, ⑪항공·우주, ⑫첨단 소재·부품·장비, ⑬탄소중립, ⑭방위산업 <추 가>	□ 세부기술 대상 확대 ○ 14개 분야 273개 기술 — 1개 신설 <table border="1"> <thead> <tr> <th>분야</th><th>세부기술</th></tr> </thead> <tbody> <tr> <td>방위 산업</td><td>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td></tr> </tbody> </table> ※ 1개 기술은 국가전략기술 상향 (미래차 : 탑승자 인지 및 인터페이스)	분야	세부기술	방위 산업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
분야	세부기술				
방위 산업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				

<개정이유> 첨단 전략산업 R&D 활성화

<적용시기> '25.7.1. 이후 발생하는 비용 분부터 적용

53

인공지능 분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세액공제 사후관리 방안 마련(조특령 §21④·⑤·⑩·⑭·⑰)

종 전	개 정
□ 일반제품을 병행생산하는 경우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로 세제지원하되 사후관리 적용 ○ (관리대상) 일반제품을 병행생산하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 (관리기간) 투자완료일부터 투자완료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 (관리기준) 사후관리 기간 동안의 누적 사용비용이 다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전용(轉用)한 것으로 간주 － 해당 시설 총 생산량 중 국가전략기술 사용 제품 판정기준 : 50% 초과 ＜추 가＞ ○ (전용시 납부세액) 공제세액 상당액(차액*) + 이자상당액 납부 ※ (예)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공제세액 - 일반시설 공제세액 ○ (자료제출) 생산량*관련 자료 작성·보관 및 제출(사후관리 마지막 과세연도 법인세 신고시) 의무 ※ 측정대상, 측정기간, 작성방법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규정	□ 서비스 제공(인공지능 분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사후관리 방안 마련 ○ 서비스 제공 시설로서 국가전략기술 외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화시설 포함 ○ (좌 동) － 서비스 제공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 해당 시설 총 사용시간 중 국가전략기술 관련 서비스 제공 시간이 50% 초과 ※ 기획재정부령으로 규정 ○ (좌 동) ○ 서비스 제공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경우 연구개발업무시설 규정*준용 ※ 사용시간 관련 자료 작성·보관 및 제출 의무

<개정이유> 첨단 전략산업 시설투자 활성화

<적용시기> '25.1.1. 이후 투자 분부터 적용

01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

02

2025
세무별 핵심 개정세법

03

2025
개정세법 종전·개정사항 비교

54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특례 가액요건 상향

(조특령 §68의2①)

종 전	개 정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특례* ※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시 기존 보유 주택에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주택소재지) 인구감소지역 - 단, 수도권 및 광역시 구지역은 제외하 되, 수도권 내 접경지역은 포함 ○ (주택가액) 공시가격 4억원 이하 ○ (적용기간) '24.1.14.~'26.12.31. 취득분	☐ 지원대상 확대 ○ (좌 등) ○ 비수도권 가액기준 상향 - 수도권 공시가격 4억원, 비수도권 공시 가격 9억원 ○ (좌 등)

<개정이유>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적용시기> '25.8.14.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55

동업기업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서류 명확화

(조특령 §100의24, 조특칙 §46의2)

종 전	개 정
☐ 동업기업 소득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서류 ○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 표와 손익계산서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분가액조정명 세서 ○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등	☐ 신고서류 명확화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표준재무상태표와 표준손익계산서 ○ (좌 등)

<개정이유> 동업기업 제출서류 명확화를 통한 납세자 편의 제고

[감면 등 특례제도 적용기한 정리]

적용기한	내용(조문)
종료	-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 적용기한 종료(§13의4)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24)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종료(§91의20) - 청년도약계좌 세제지원 적용기한 종료(§91의22)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종료(§104의25) -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종료(§107의3)
연장 (2026.12.31.)	-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추가공제 적용기한 연장(§29의8)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특례 적용기한 연장(§98의9) - 농임업인에 제공되는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기한 연장(§106) -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106, §111) -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106의2) -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111의5)
연장 (2028.12.31.)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7) - 상생결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7의4) - 상생협력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8의3) - 지방 경제산업 특구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12의2·§64·§99의9·§121의8·§121의9·§121의17·§121의20~22) - 벤처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13) -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예의 출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13의2)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등 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13의3) - 벤처투자 세제지원 특례 적용기한 연장(§14, §16) - 벤처기업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적용기한 연장(§15) - AI 우수인력 등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18의3) - 영상콘텐츠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25의6) -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25의7) -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27) -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기한 연장(§29의4) -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29의8) -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60) - 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61)

01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

02

2025
세무별
핵심
개정세법

03

2025
개정세법
종전-개정
상황
비교

적용기한	내용(조문)
	• 공장·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기업의 소득·법인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63, §63의2)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69의2) •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69의3) • 영농자녀 자경농지 증여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71) •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72)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적용기한 연장 (§74) • 개발제한구역 토지·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77의3) • 사회적기업·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85의6) • 중소기업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85의8) •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87) •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87의2) • 비과세 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88의2)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96) •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96의3) • 농어촌주택등 취득시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99의4) •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적용기한 연장 (§100의32) •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104의30)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104의31) •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105) •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106) •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106) • 행복기숙사 기숙사비 등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106) • 온실가스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106) • 전기·수소 이용 시내·농어촌·마을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106) •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107의2) • 중고차 등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108) •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117) •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 (§121의33)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126의2) • 현금영수증 가맹점 소득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126의3) • 지역사랑상품권 업무추진비 적용기한 연장 (§136) • 해저광물자원개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140)

0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01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제출 서류 추가

(국조법 §6②)

종 전	개 정
☐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 (청구기한)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기한 ○ (제출자료) －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 정상가격 입증서류* *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기재부령에서 규정 <추 가> ○ (경정기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 (경정 관련 자료 보완) 제출자료 미비 시 30일 이내 범위에서 보완요구 가능 － 자료 보완 기간은 경정 기한 산정에서 제외	☐ 제출서류 추가 ○ (좌 동) － 상대국 수정신고 등 이중과세 발생 입증서류 ○ (좌 동)

<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6.1.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01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

02

2025
세무별
핵심
개정세법

03

2025
개정세법
종전-개정사항
비교

02

거주자증명서 발급대상에 투자신탁 등 추가

(국조법 §41②)

종 전	개 정
☐ 거주자증명서 발급 대상 ○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추 가>	☐ 발급 대상 추가 ○ (좌 동) ○ 수익적 소유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로만 구성된 투자신탁 등* ※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
☐ 거주자증명서 발급 사유 ○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 율 적용 ○ 조세조약 이행에 필요한 경우 ○ 조세목적상 거주자·내국법인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좌 동)

<개정이유> 납세 편의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발급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03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및 납부

(국조법 §63·§84)

종 전	개 정
☐ 국내구성기업이 납부하는 세액 ○ 소득산입규칙·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 <추 가> ☐ 추가세액배분액 신고·납부 ○ (신고) 추가세액배분액 납부의무가 있는 기업*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소득산입규칙·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으로 추가세액을 배분받은 구성기업 — (신고기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5개월* 이내 * 단, 최초 적용연도의 경우 18개월 ○ (납부) 신고서 제출기한까지 납부 ○ (분납) 2천만원 초과시 1개월 내 분납 가능	☐ 납부세액의 범위 확대 ○ (좌 동) ○ 내국추가세액배분액 ☐ 내국추가세액배분액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

<개정이유>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하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1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

02

2025
세무별 핵심 개정세법

03

2025
개정세법
종전 개정사항
비교

04

글로벌최저한세 계산 시 대상조세 배분방식 보완

(국조법 §67①)

종 전	개 정
□ 대상조세 배분 ○ 대상조세와 관련된 소득의 배분 등을 고려해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 * 다국적기업그룹에 포함된 기업 및 이를 본점으로 하는 고정사업장 □ 배분대상 대상조세 - 고정사업장의 소득과 관련한 세금 - 다른 구성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등과 관련한 세금	□ 범위 확대 ○ 다른 구성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배분 *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구성기업이 아닌 기업 □ 대상 확대 (좌 동) - 다른 구성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등과 관련한 세금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26.1.1. 이후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05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및 배분

(국조법 §73의2 신설)

종 전

개 정

<신 설>

□ 내국추가세의 적용

-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 구성기업이 최저한세율(15%) 미만으로 과세 시, 내국 추가세액을 계산
- 계산된 내국추가세액은 각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하여 과세

□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 내국추가세액 = [최저한세율(15%) - 국내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

× 초과이익* + 당기추가세액가산액

※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 실질기반제외소득(구성기업의 '인건비' 및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의 일정비율)을 제외한 금액

□ 내국추가세액의 배분방식* 규정(① 또는 ② 중 택1)

※ 각 구성기업에 배분된 내국추가세액은 "내국추가세액배분액"으로 정의

① (법정배분) 내국추가세액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한 배분방식 규정

※ 각 구성기업의 해당사업연도 소득규모에 비례하여 배분(대통령령)

② (지정배분) 국내구성기업 간 합의에 따라 자율 배분

<개정이유>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하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1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

02

2025
세목별
핵심
개정세법

03

2025
개정세법
종전 개정사항
비교

06

무국적구성기업에 대한 내국추가세 과세

(국조법 §73의2 신설)

종 전	개 정
<신 설>	□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무국적구성기업 ○ 내국추가세 적용 시, 무국적구성기업 중 우리나라에서 설립·등록된 투과기업* 등의 경우 소재지국을 국내로 보아 내국추가세액 계산 ※ 기업 손익이 해당 기업이 아닌 지분소유자에게 직접 귀속되는 기업 ○ 실효세율 및 내국추가세액은 각 기업별로 타 국내구성기업과는 별도의 단위로 계산

<개정이유>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하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7

최소적용제외 특례

(국조법 §74)

종 전	개 정
□ 최소적용제외 특례 ○ (요건) 해당국에 소재한 각 구성기업의 매출·순소득 합계가 일정액 미만*일 것 ※ 당해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의 평균 GloBE매출액이 1천만유로 미만이고, 평균 GloBE순소득이 1백만유로 미만 ○ (효과)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	□ 내국추가세 적용시에도 동일 특례 적용

<개정이유>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하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8

소수지분구성기업·공동기업에 대한 특례

(국조법 §75, §77)

종 전	개 정
☐ 글로벌최저한세에서 별도 실효세율·추가세액 계산 단위 ① 소수지분하위그룹 또는 소수지분구성기업 ② 공동기업 및 그 자회사 그룹	☐ 내국추가세 적용시에도 동일 특례 적용

<개정이유>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하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1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

02

2025
세무별
핵심
개정세법

09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국조법 §79)

종 전	개 정
☐ 글로벌최저한세의 투자구성기업*의 계산 특례 * 투자기업·보험투자기업인 구성기업 ○ 투자구성기업의 경우 ①별도 계산* , ②투시 과세처리** , ③과세분배방식*** 중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 할 수 있음 * 투자구성기업 실효세율·추가세액은 동일국가 내 다른 구성기업과 합산 하지 않고 별도로 계산 ** 주주구성기업이 시가법으로 과세되는 경우 해당 투자구성기업을 투시과세 기업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 *** 주주구성기업에 소득을 분배 후, 미배분 소득에 대해 15%로 과세	☐ 내국추가세 적용시에도 동일 특례 적용

<개정이유>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하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3

2025
개정세법
종전-개정
상황
비교

10

적용면제 특례

(국조법 §80)

종 전	개 정
☐ 적용면제 ① 전환기 적용면제 *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초기,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transitional) 적용 - (요건) 적격 국가별보고서 기준으로 면제요건* 충족 * ①소액 ②간이 실효세율 또는 ③초과이익 요건 - (효과) 전환기*에 한해 해당 국가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 가능 * '26.12.31. 이전 개시하고 '28.6.30. 이전 종료하는 사업연도 ② 일반적 적용면제 * 전환기 종료 이후 적용되며, 구체적 요건은 대통령령에 위임 - (효과) 해당 국가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 가능	☐ 내국추가세 적용시에도 동일 특례 적용

<개정이유>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하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1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 적용기한 신설

(국조법 §111㉠)

종 전	개 정
☐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 ○ 주주가 소유한 전 세계 피지배 외국 법인의 실효세율이 기준세율 미달 시, 차액분을 주주 소재지국에서 과세 ○ 글로벌최저한세 실효세율 계산 시 주주 소재지국에서 과세된 세액은 피지배외국법인(구성기업)에 배분하고, 피지배외국법인의 세액으로 반영 <신 설>	☐ 적용기한 보완 ○ (좌 동) ○ (적용기한) '25.12.31일 이전 개시, '27.6.30일 이전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의 세액(대상조세) 배분은 한시적 운영)

<적용시기> '26.1.1. 이후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추가세액 배분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01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

02

2025
세목별
핵심
개정세법

03

2025
개정세법
종전+개정사항
비교

10

기타 법률

01

교육세 세율 인상

(교육세법 §5)

종 전	개 정										
☐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										
<table> <tr> <th>과세표준</th><th>세율</th></tr> <tr> <td>수익금액</td><td>0.5%</td></tr> </table>	과세표준	세율	수익금액	0.5%	<table> <tr> <th>과세표준</th><th>세율</th></tr> <tr> <td>수익금액 1조원 이하</td><td>0.5%</td></tr> <tr> <td>1조원 초과</td><td>1.0%</td></tr> </table>	과세표준	세율	수익금액 1조원 이하	0.5%	1조원 초과	1.0%
과세표준	세율										
수익금액	0.5%										
과세표준	세율										
수익금액 1조원 이하	0.5%										
1조원 초과	1.0%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02

주류 교육세율 명확화

(교육세법 §5①)

종 전	개 정
☐ 주류에 대한 교육세 ※ 주정, 탁주, 약주는 비과세 ○ (과세표준) 주세액 ○ (세율) - (원칙) 10% - (예외) 30% • 맥주 • 증류주·기타주류(주세율 72%)	☐ 주류 교육세율 명확화 ○ (좌 동) ○ (좌 동) • 주세율 70% 초과 주류* ※ 증류주·기타주류(주세율 72%)

<개정이유> 주류 교육세율 명확화

03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한시적 개별소비세 경감 신설

(개소법 §1②)

종 전	개 정
<신 설>	☐ 합성니코틴 담배* 한시적 감면 신설 *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 확대 (원료 : 연초의 잎 → 연초 및 니코틴) ○ 법 시행일*부터 2년간 세율 50% 감면 적용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 시행일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함

<개정이유>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영세사업자 초기 부담 경감

<시행시기> 법 시행일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01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

02

2025
세목별
핵심
개정세법

03

2025
개정세법
종전+개정사항
비교

04

담배 폐기 시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절차 간소화

(개소법 §20의3③, 개소령 §34④)

종 전	개 정
□ 담배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 공제·환급 사유 ① 반출된 담배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훼손 ② 반출된 담배가 포장, 품질불량, 판매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수입판매업자 담배보관장소로 반입 <추 가> ③ 세액 초과 신고·납부시 ④ 면세담배, 원료용 담배 ○ 공제·환급 사유 증명서류 제출 － (공제환급사유 ②의 경우) 환입확인서 <추 가>	□ 공제·환급 사유 합리화 ○ 공제·환급 사유 확대 ① (좌 동) ② (좌 동) － 포장, 품질불량, 판매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로 폐기* ※ 「지방세법」상 절차에 따른 폐기 (제조장 등 미반입·폐기 가능) ○ (좌 동) ○ 공제·환급 사유 증명서류 추가 － (제조장 등 반입시) (좌 동) － (미반입 폐기시) 폐기승인서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6.4.1. 이후 공제·환급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05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청년미래적금 추가

(농특세법 §4)

종 전	개 정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 조세특례제한법 상 저축 상품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이자·배당 소득 소득세의 감면세액 10% ○ 비과세종합저축 ○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 ○ 장병내일준비적금 ○ 청년희망적금 ○ 청년도약계좌 등 <추 가>	☐ 비과세 대상인 저축 상품 추가 ○ (좌 동) ○ 청년미래적금

<개정이유> 청년 자산형성 지원

01

2026
달라지는 세법제도

02

2025
세목별 핵심 개정세법

06

농어촌특별세 납부유예 규정 신설

(농특세법 §9의2)

종 전	개 정
<신 설>	☐ 납부유예 규정 신설 ○ 본세를 납부유예 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해당 본세 납부유예의 예에 따라 납부유예 가능

<개정이유> 조문 명확화

03

2025
개정세법
종전-개정
상황 비교

07

주류제조면허 취소 예외규정 신설

(주류면허법 §13)

종 전	개 정
□ 주류 제조면허 취소사유 ○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면허 취득, 면허요건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 ○ 면허 취득 결격사유 해당 ① 국세·지방세 100만원 이상 포탈로 처벌·처분 후 5년 미경과 ②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처벌 후 5년 미경과 ③ 「조세범 처벌법」 등 위반하여 금고 이상 실형 집행종료·면제 후 5년 미경과 ④ 「조세범 처벌법」 등 위반하여 금고 이상 형 집행유예기간 중 ⑤ 임원·지배인 등이 면허취소 2년 미경과 또는 ①~④ 해당 <단서 신설>	□ 면허 취소 예외규정 신설 ○ (좌 등) ①~⑤ (좌 등) — (예외) 6개월 이내 해당 임원·지배인 교체시 면허 유지

<개정이유> 주류제조면허 취소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6.1.1. 이후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08

주류용기 등 검정제도 간소화

(주류면허법 §28, §38, 주류면허령 §35)

종 전	개 정
☐ 주류용기 등 검정 제도* * 세무서장이 주류 제조·저장 용기 등의 용량 등을 사용 전에 확인하는 제도 ○ (검정의무자) 주류·밀술·술덧 제조자 및 주류 판매업자 ○ (검정대상) 제조·저장·판매 기계·기구·용기 ○ (절차) 용기 등 사용 전 검정 <추 가> ☐ 과태료(2천만원 이하) 부과 사유 ○ 미검정 용기 등 사용	☐ 검정제도를 신고제도로 변경 ○ (신고의무자) 주류·밀술·술덧 제조자 ○ (신고대상) 제조·저장 용기 ○ (절차) 용기 사용 전 신고* * 법령상 적합한 경우 신고 수리 - 주류제조면허 신청시 별도의 용기 신고 생략 가능 ☐ 부과 사유 조정 ○ 미신고 용기 사용

<개정이유> 주류제조자 등 부담 완화

<적용시기> '26.7.1. 이후 사용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6.6.30. 이전 검정완료 분은 종전 규정을 적용

01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

02

2025
세목별
핵심
개정세법

03

2025
개정세법
종전 개정사항
비교

2025.11.17.~12.12. 입법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01

단시간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판단 기준 간소화

(조특령 §26의8)

현 행	개 정 안
☐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단시간 근로자 범위 ○ 월별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판단 기준 간소화 ○ 연간 월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 $\frac{\text{연간 총 근로시간}}{\text{해당 과세연도 근무 개월수}}$

<개정이유> 기업의 납세협력비용 경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4.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25.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26조의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 적용

2025.12.1.~12.15. 입법예고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01

증권거래세율 환원

(증권령 §5)

현 행	개 정 안
☐ 증권거래세 세율 ○ 기본세율 : 0.35% ○ 탄력세율 ① (코스피) 0%(농특세 0.15%) ② (코스닥·K-OTC) 0.15%(농특세 없음) ③ (코넥스) 0.1%(농특세 없음)	☐ 세율 조정 ○ (좌 동) ○ 탄력세율 ① 0.05%(농특세 0.15%) ② 0.20%(농특세 없음) ③ (좌 동)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01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

02

2025
세목별
핵심
개정세법

03

2025
개정세법
종전+개정사항
비교

소득세법 시행령

02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

(소득령 §26의3)

현 행	개 정 안
☐ 배당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 「상법」 §461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신 설> - 다만,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	☐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과세제외 범위 조정 ○ (좌 동) - 대주주등*의 경우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까지 제외 → 취득가액 초과분은 배당소득세 과세 ※ ① 상장법인의 대주주 ② 비상장법인인 주주(K-OTC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 (좌 동)

<개정이유> 자본준비금 배당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

<적용시기> '26.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유의사항〉

<2025 핵심 개정세법>은 2025.12.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각 세목별 핵심 개정사항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이 자료는 국회에서 의결된 세법 개정사항을 포괄하고 있으나, 실무에 적용할 때는 반드시 추후 정부의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규정과 개정세법의 구체적인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세무사회 2025년 핵심 개정세법] 만든 사람들

● 감수

한국세무사회 회장 구재이, 부회장 김선명, 부회장 이동기, 연구이사 김연정, 국제이사 백낙범 (국민의 세무사TF) 고경희, 김두천, 김병한, 박재혁, 박풍우, 양은진, 윤희원, 이강오, 이석정, 이재홍, 이정희, 이종훈, 이한우, 장보원

● 편집

한국세무사회 연구기획실 함택동, 정윤아, 김영준, 박시훈, 정은주, 나윤성

※ 알려드립니다. 책자의 내용 중 잘못된 내용이 있거나 수정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한국세무사회 연구기획실(전화 02-521-9544, 이메일 tax9544@kacpta.kr)로 연락 바랍니다.

2025 핵심 개정세법

발행일: 2025년 12월

발행인: 구 재 이

발행처: 한국세무사회

주 소: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105(서초동)

등 록: 1991.11.20. 제21-286호

TEL 02-521-9544

FAX 0508-118-1854

저 자 와
협의하에
인자생략

〈이 책의 내용을 한국세무사회의 허락없이 무단복제 출판하는 것을 금합니다.〉

본서는 항상 그 완전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적용할 경우에는 충분히 검토하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